



기술창업기초



본 교재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교재이며
표준교재와 관련한 내용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CONTENTS

-  I. 기술창업의 이해
 - II. 기술창업과 기업가정신
 - III. 창업관련 법규
 - IV. 기술창업 구상 및 사업타당성분석
- 

I. 기술창업의 이해

1. 기술창업의 개념과 특징
2. 기술창업의 주요요소
3. 기술창업의 분류
4. 기술창업의 절차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6. 기술창업의 성장모델
7. 기술창업의 성공요인
8. 기술창업의 활성화 방안

가. 기술의 정의

○ 위키백과의 정의

기술(技術)은 **과학**, **공학**, **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예: 건축 기술)
2.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 (예: 운전 기술)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산업**에서 다루는 '기술'의 의미는 사전의 첫 번째 의미를 말하며, 이는 영어의 **테크놀로지**에 대응한다. 두 번째 의미는 영어의 'technique' (기법)에 대응한다. 첫 번째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가리키고자 할 때는 '**과학기술**', 또는 '**과기**'(科技)라는 용어를 쓴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

1. “기술”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정의

-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이란 제조업,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중 시행령 별표2의 업종을 말한다.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10~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5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0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폐기물 처리업	382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4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5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1
○소방시설 공사업	42204
○전기 공사업	4231
○도매 및 소매업	45~47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9100
○도시철도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9211
○도로 화물 운송업	493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
○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내 운송업	50203
○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1
○부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2
○보관 및 창고업	5210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2921
○공항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2931
○화물 취급업	5294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운송장비 임대업	691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69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산업용 세탁업	96911

- 5 - 비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업종 외에 법 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기술창업의 개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에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기술창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9호. 2022. 06.29 시행)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기술이전의 정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사업화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기술창업활성화**(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발표에 따른 분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연간 창업기업동향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창업기업 수 및 증감률>의 발표 내용에서 창업 기업을 기술창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개인서비스, 부동산업,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기술창업 업종별 창업 수 및 증감률>의 발표내용에서 기술창업을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나. 기술창업의 개념

○ 개발주체에 따른 기술사업화의 유형분류

개발주체	사업화 유형	내용
공공 부문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정부 R&D자금의 투입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것으로 정부 R&D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유형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주관이 되어 개발한 기술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창업 및 사업화 하도록 하는 유형
민간 부문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의 판매희망자와 기술의 구매 희망자가 연결되어 민간부문에서 해당기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사업화하는 유형
	자체 기술 사업화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하였거나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직접 제품화하여 판매 하는 유형

〈자료: 국가 R&D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최종연구보고서. 신경제연구원〉

○ 추진방식에 따른 기술사업화의 유형분류

구분	주요내용
기술양도	기술보유자(공공기관, 민간기관)가 기술도입자(민간기업 등)에게 기술소유권 이전
실시권 허락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소유권의 변화 없이 일정기간 로열티 지불, 기술실시권(라이선싱)허락
기술지도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 적용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과 병행하여 수행)
공동연구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등)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이전 목적 공동연구 수행
사내벤처/ 기술창업	기술보유자의 연구자 등 소속직원이 직무발명 등을 이전 받아 창업 또는 창업에 참여
합작투자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의 합작으로 제3의 기업설립 및 사업화 추진(기술보유자가 공공 연구기관인 경우 주로 보유기술 현물출자 참여) 상호 보완적 기술과 자원보유 기업간 전략적 목적으로 추진
인수·합 병	기술도입자(민간기업 등)가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영인프라를 보유한 기술보유자(민간기업 등)를 인수·합병
기술지주회 사	기술보유자(공공기관 등)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보유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가 목적인 자회사 운영

〈자료: 기술사업화. 도서출판청람. 성장수외5〉

다. 기술창업의 특징과 효과

○ 기술수명주기와 상업적 성과

- 기술수명주기는 특정 기간 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품의 기술적 발전으로부터 상업적 성과가 창출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 시장이 성숙되어 결국 쇠퇴하기까지 기술의 발전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제품의 비용과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설명해준다.
- 이는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이를 통해 비즈니스 당사자는 시장에서 제품의 잠재적 성장정도 및 향후 수익예상기간을 판단하여 연구개발 투자 회수 시점을 정확히 예측 하고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Dussauge et al., 1987).
-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상업적(경제적) 성과는 반드시 연구개발비용을 상쇄하게 되는데 기술수명주기를 통해 이러한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단계	시기적 특성 및 현상
연구개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혁신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시기 -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기로 실패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발전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발명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시기 - 이 시기의 기업의 목표는 급진적 성장과 더불어 기개발된 제품의 확산이며 가장 최신의, 효율적인 제품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성숙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혁신이 일반적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 - 경쟁자 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게 되어 매출과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쇠퇴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진이 확보되지 않고 결국 제로섬(zero-sum)게임 형태로 쇠퇴하게 된다.

〈출처:기술 분야별 기술혁신 패턴과 특성의 차이분석, 변정은 외〉

다. 기술창업의 특징과 효과

○ 죽음의 계곡과 캐즘, 다윈의 바다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죽음의 계곡 (Death Vall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서부의 사막 이름으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행 지름길을 찾던 탐험대가 사막 길을 택했다가 많은 동료를 잃은 뒤 이런 이름을 붙였다. -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양산체제 구축까지 단계별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 - 생산을 위한 기술문제,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문제, 신제품 제조를 위한 거액의 투자비용, 시장의 불확실성, 경쟁자의 저가 공략 등 수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민간 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정책자금의 확보 또는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유·무형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창업가와 조직 구성원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캐즘 (Chas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지질학 용어로 지각변동으로 인해 골이 깊고 넓어지면서 지각이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 - 신제품이 나와서 초기의 목표시장에서 잘 팔리다가 대중화 단계에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단절현상으로 주류시장의 진입에 실패하는 현상을 말한다. - (사례) 위성전화 이리돔과 세그웨이는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 스마트폰은 캐즘을 극복하고 대중화에 성공
<p style="text-align: center;">다윈의 바다(Darwinian S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어떼와 해파리가 득실대서 수영하기 어려운 호주 북부의 해변을 말한다. - 죽음의 계곡과 캐즘을 건너서 대중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서 다른 경쟁제품과 경쟁하며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 - 창업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시장과 트렌드의 변화, 정책, 마케팅 등 기술 외적 인 요인들로 인한 어려움을 의미한다. - 창업기업이 성장단계로의 진입에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다양하고 예측 곤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하면서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다. 기술창업의 특징과 효과

○ 기술창업기업의 특징

기술창업이라고 하면 창업 중에서 혁신기술 및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
-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
- 신기술 또는 개발아이디어를 독립 기반위에
- 서 영위하려는 기업의 창업
-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의 창업
-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요인인 기업의 창업
- 제품의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사회성·국제성을 지닌 기업의 창업
- 신규 산업의 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창업
- 기술의 우수성, 전문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창업

○ 기술창업의 효과

- 자유경쟁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음.
- 기업의 존속 및 발전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 국민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
- 국가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일자리의 창출 및 실업극복에 기여.
- 수출활동을 통하여 외화획득에 기여.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약화시키며 다수 개인의 부와 소득의 창출 가능.
- 기회균등과 공정거래질서의 개선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에 기여.
- 활발한 시장진입과 퇴출을 통해 기업간 기술 및 품질 경쟁을 유발하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
- 혁신을 이끌어 내고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
- 지속적인 혁신 추구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활동을 통하여 생계형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만족도가 높음.

- 창업을 하는 이유는 창업의 성공을 통하여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창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 창업의 주요요소는 주장자에 따라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사람

창업기업의 업무는 사람이 수행하게 되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의지, 능력과 자질, 사업에 임하는 태도, 구성원의 협력관계 등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됨

① 창업자

-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창업자의 능력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어질 수 있음
- 창업자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역량의 성장이 필요하며 환경변화에 적합한 기업가정신과 태도의 변화 필요

② 동업자

- 창업자와 함께 금전, 현물 또는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부문별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실을 분배하여 얻는 자로서 창업자 다음으로 중요한 구성원이 됨
- 창업자와 동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각각의 역량에 적합한 역할과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동반자로서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신뢰구축장치 필요

③ 창업기업의 팀원

- 창업자와 함께 창업사업의 성공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창업자를 도와서 업무를 수행
-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업무량에 비하여 많은 인원의 채용이 어려우므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1인 다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
- 기존 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비전의 제시를 통하여 동기부여 필요

나. 창업아이디어(기술, 제품, 서비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팔 것인지를 결정

- ①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아이디어로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어질 수 있어야 함
 -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창업을 위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음
- ②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함
- ③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시장

-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질 지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대상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있어야 함
 - 많은 경우에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고 제품을 개발한 후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
- ① 창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려는 고객 집단
 - ②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며 수요를 간접적으로 조절
 - ③ 창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수준에 맞아야 함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 판매가격 < 고객이 느끼는 가치
 - ④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 ⑤ 기존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라. 자금(자본)

계획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자본)을 말하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자본)이 없다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자기자본

조달된 자본으로서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을 말한다.

① 개인기업

- 개인기업의 경우 1인의 사업주인 경우 창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 사업주 1인이 투자하게 된다.
- 여러 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모두가 협의에 의하여 자금을 부담하게 된다.

② 법인기업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기업의 투자자는 개인, 법인(벤처캐피탈 포함) 모두가 될 수 있다.
- 여러 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게 되므로 공동사업과 같은 형태로 참여하는 출자자가 자금을 부담하게 된다.

(2) 타인자본

- 조달된 자본으로서 상환의무와 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본을 말한다.
-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이외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친인척, 지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창업의 형태에 따른 창업분류

창업의 형태에 따라 기술창업, 벤처창업, 일반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벤처창업	High Risk - High Return에 충실하며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되고 있음
일반창업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서 도소매업과 일반서비스업,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 등이 해당됨

나. 지원목적에 따른 창업분류

창업의 정의는 지원목적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지원목적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목적	관련법규	주요내용
조세이외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 이외의 창업지원 및 부담금 감면
국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의 감면
지방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다 지원대상에 따른 창업기업의 분류

개별 법률에서 창업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상과 지원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	대상기업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설립촉진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등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창업촉진 등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등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1인창조기업	1인창조기업의 설립촉진 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여성 창업의 적극적 지원 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기업	장애인 창업의 적극적 촉진 등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공예문화산업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창업촉진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음악산업의 창업활성화 및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등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창업촉진 등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설립 지원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 및 지원 등

4. 기술창업의 절차

가. 기술창업의 일반절차

기술창업의 절차는 사업아이템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절차는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으며 순서도 진행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창업절차		주요 수행내용
1. 기술창업의 구상단계	창업자분석	강점 및 약점확인/투자능력 확인/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업아이템탐색	기존사업의 탐색/신사업의 탐색/시장욕구의 탐색
	특허검색	특허정보의 검색
	소비자 및 시장검토	소비자 검토/시장검토(목표시장 및 미래시장)
2. 사업계획 수립단계	사업아이템 선정	아이템정보수집/예비사업성평가/사업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분석	기초자료의 조사/사업수행능력 검토/시장성분석/기술성분석/수익성 및 경제성분석/사업의사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소개/인력,마케팅,생산,재무계획/차질시 대안의 설정
3. 회사설립단계	사업장 확보	입지의 검토/입주신청 및 입주
	필요시 사업인허가	신고/등록/허가사항의 검토 및 신청
	회사의 설립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법인의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4. 기술개발단계	기술개발	기술개발/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지식재산권 확보
	디자인개발	관찰 및 분석/디자인개발/디자인개선/디자인 완성
	시제품제작	컨셉 및 상세설계/제작방법 검토/시제품 제작
	제품인증	인증제도의 검토/필요한 인증
5. 사업실행단계	마케팅전략수립	시장분석/표적시장의 선택/전략실행계획/전략통제
	공장설립	입지 검토/창업사업계획의 신청/공장등록
	경영관리	조직구성/직원의 채용/경영시스템구축/경영관리

4. 기술창업의 절차

나. 기술개발단계

○ 기술의 유형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기술 유형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일반적 기술	·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공통된 지식을 뜻하는 기술 · 수학, 물리학, 화학 등과 같은 순수과학, 외국어 등의 기초지식, 공구 설계능력,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전문적 지식을 의미 ·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기술의 바탕이 필요
시스템 특유 기술	· 특정한 산업분야에서 하나의 제품이나 시스템의 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고유기술 · 특정 프로젝트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특정 시스템과 직결되는 정교한 절차나 특수해법과 같은 기술 · 제조업의 경우 한 제조품목에 고유한 기술
회사특유 기술	· 특정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독특한 기술 ·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노하우 · 경쟁회사와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 기술개발의 유형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대기업과 달리 창업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장으로부터의 요구나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한 경우가 많음.
- 기술개발의 유형을 개발속도와 폭에 의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기술개발 유형	주요 내용
점진적 혁신	·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획기적인 편익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혁신
기술적 혁신	· 기술적 측면에서는 새롭지만 구매자에게 새로운 이익을 제공해 주지 않는 혁신 · 단순한 기능을 보완하거나 능률을 향상시켜 원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혁신
획기적 혁신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새로운 혁신 · 소비패턴을 바꾸거나 창출하고 소비행위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혁신

4. 기술창업의 절차

○ 기술개발방법

창업가는 기술개발에 있어서 다수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보다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핵심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함

(1)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장점 및 단점과 기술개발의 필요와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구분	장점	단점
자체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과정에서 비밀유지 · 직접 통제 가능 · 개발비용 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의 부족 및 개발비용 부담 · 기술관련 전문지식의 결여 · 시행착오에 의한 시간 낭비
위탁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인력의 활용 가능 · 전문지식의 보완 · 시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비용의 부담 · 직접 통제하기 어려움 · 기술정보의 유출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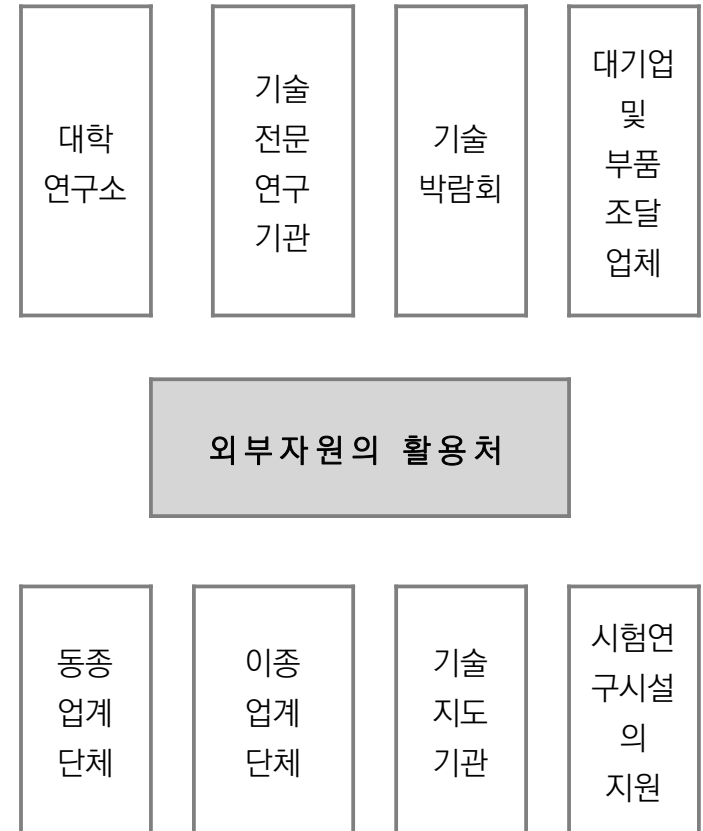
(2) 중요성에 따른 분류

다음 중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해야 하는 프로젝트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기술개발
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시간적으로 절박하지는 않으나 언젠가는 해야 하는 기술개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현재는 영향이 적지만 자원과 인력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기술개발

(3) 외부 자원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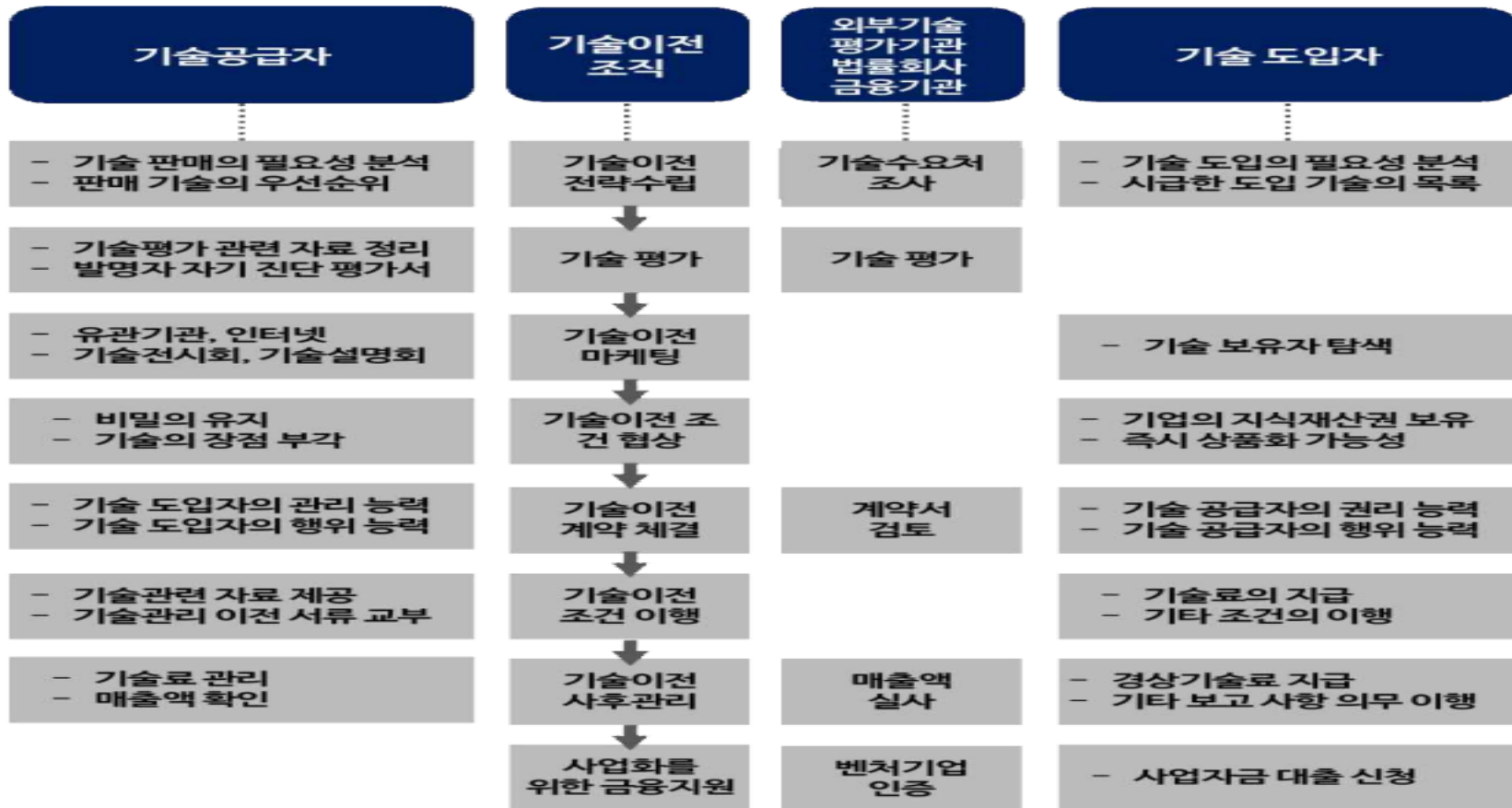
기술수준의 낙후, 인력의 부족, 자금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안으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4) 기술이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 업무 메뉴얼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술이전 절차는 ①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하고 ②기술 평가를 한 후 ③기술 마케팅을 추진하고 ④기술 도입자와의 기술 이전 조건 협상을 거쳐 계약한 뒤 ⑤사후관리 진행

〈일반적인 기술이전 사업화절차〉



자료: 국가R&D성과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방안 최종보고서2021.03.신경제연구원

4. 기술창업의 절차

(5) 기술사업화 능력이 뛰어난 기업의 특성

특성	내용
1.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신속히 생산한다.	-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한 기업은 사실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고가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2. 기술을 광범위한 시장에서 제품에 접목시킨다.	-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은 가능한 많은 상품과 지역시장으로 비용을 분산시켜야 한다.
3. 제품모델의 수를 늘린다.	- 시장이 분화되면 제품응용력이 높아 틈새시장에 강한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즉 제품모델이 상당히 다르고 틈새의 경계가 확실히 유지되는 한 총매출량은 생산모델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 : 자동차의 세분화된 시장)
4. 제품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다.	많은 시장에서 제품들이 더 많은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모든 기술에 정통해야 하며 이를 습득해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술사업화 능력의 강화방안

특성	내용
1. 사업화기술을 기업의사결정 순위에서 위쪽에 둔다.	많은 기업이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R&D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자금만 투입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 구성원들의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한다.	목표를 향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한다.
3. 다양한 기술에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라.	필요한 기술이 없이는 사업화를 할 수 없다.
4.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정해져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최고경영층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자료: 하버드창업가이드, 21세기북스, 지용희, 오세종 옮김〉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가. 제도의 취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 하는 제도

나. 법적근거 : 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다. 신고주체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라. 신고절차

-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접수(www.RND.or.kr) / 先설립 後신고

5) 처리기간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7일 이내

마. 운영기관

- 법 제20조 및 영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 수행

바. 인정요건

-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함
 - 학위는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나,
 -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영 별표1 을 제외한 모든 업종)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함.
 - 대기업·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을 갖추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 연구소 /전담부서 요건〉

구분		신고 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창업일 이후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소재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개발 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 자재(부대시설은 필수사항 아님)	

〈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구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 학· 농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 상 학위 를 가진 사람	①좌동 ②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3년제 전문대는 1년 이상) ③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 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인 사람	①좌동 ②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 이 있는 사람 ③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연구공간요건 〉

구분	내용
기본요건	·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 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외	①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②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소재지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
독립건물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빌딩의 1개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건물구조	-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전담부서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벽체가 바닥에서 최소 2m 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면적기준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현판부착	- 연구소/전담부서 입구에는 해당 장소가 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허가 및 용도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요건〉

구분	내용
연구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내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는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전담부서 직원만 활용하는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구소/전담부서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연구소 직원수 대비 적절한 면적일 것 - 기업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전담부서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됨 - 연구소/전담부서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전담부서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사. 설립 및 신고절차

단계	준비 및 확인사항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여부 확인	·대상기업 여부 확인 ·과학기술분야/지식서비스분야(시행령 별표 1에 한정)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여부
↓		
2	인적요건 확인 및 구비	·연구소 직원 수의 적정여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인적요건의 미비 시 구비
↓		
3	물적 요건 확인 및 구비	·독립 공간 요건의 충족여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적합여부 ·물적 요건의 미비시 구비
↓		
4	신고서류의 작성 및 신고(등록 및 접수)	·필수서류 작성 ·선택적 서류 작성필요 여부 확인 ·온라인 작성 서류의 출력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첨부서류 포함)
↓		
5	심사	·서류심사 ·필요 시 현지실사 ·종합평가
↓		
6	연구소 인정	·인정서 발급(온라인 출력)
↓		
7	사후관리	·변경신고 ·연구개발실적보고
↓		
8	연구소 취소	·자진취소 ·직권취소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아.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 서식	①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③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④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 서식)	①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②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③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④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 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총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전담부서 조직도 각1부 ⑦ 도면(총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구비 서류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중소기업입증서류(필수) - (개인, 법인 공통)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주업종 확인서류(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보험가입보고서(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2호)	

가. 기업의 성장과정

- (1) 기업이 창업과정을 거쳐 탄생된 후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하면서 성장· 발전하게 된다.
: 순조로운 성장 또는 발전의 저해나 도산
- (2) 기업들의 성장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장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의 어려움 발생
(가) 기업의 규모와 처한 환경, 업종의 다양성과 성장능력의 차이
(나) 경영자 들의 다양한 경영스타일
- (3) 성장과정에 관한 공통사항에 대한 틀을 조직화 할 경우의 이점
(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 및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① 기존 전략의 유지나 확장, 성장, 유지를 위한 기술전략
② 경영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관리자 들의 훈련과 교육의 실시여부 평가 등
(나) 기업의 성장과정 중 각 단계에서 기본적인 필요사항의 예측에 유용
① 창업 초기에 오너기업가가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적 요구, 정보의 수집과 분석
② 기업이 점차 대형화 및 복잡화 됨에 따른 변화의 예측 등
(다)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 (4) 중소기업의 기업진단을 위한 분석기준
(가) 기업규모 - 종업원의 수, 매출액
(나) 기업의 성숙도 또는 성장단계 별 특징
- (5) 중소기업의 분석 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 기업이 각 발전단계를 모두 거치면서 성장해가거나 그 과정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나) 기업의 탄생 및 성장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들을 간과하고 있다.
(다) 기업의 규모를 연간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며, 부가가치나 사업장의 수, 제품계열이나 생산기술의 복잡성과 같은 요인들을 무시하고 있다.

가.기업의 성장과정

성장단계 모델은 기업의 성장과정과 영향요소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Kazanjian, 1988).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연구별로 제시하고 있는 성장단계를 세 가지 유형별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기업의 성장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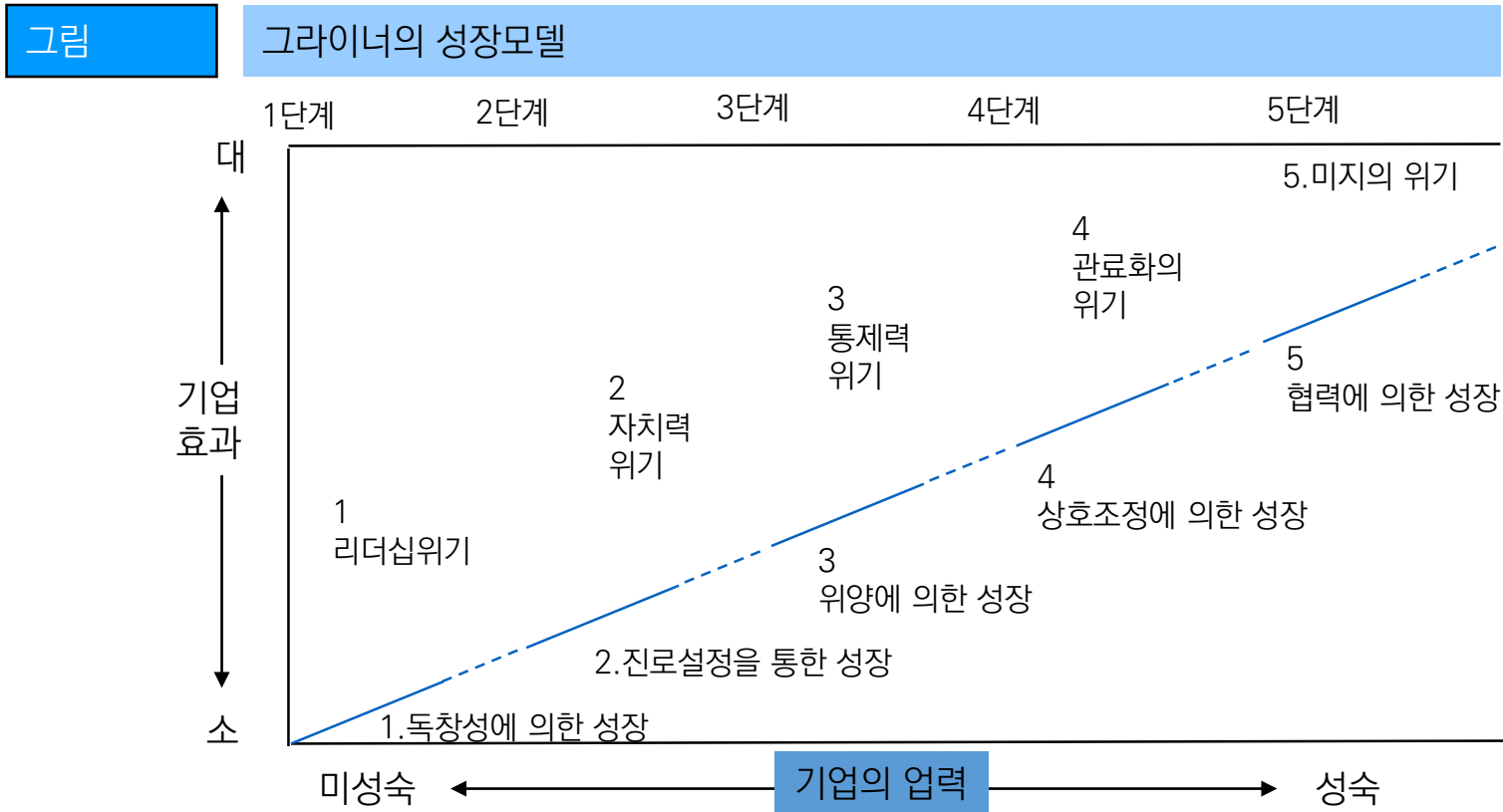
단계	연구자	성장과정				
3 단계	Downs(1967)	침투기	급성장기		쇠퇴기	
	Lippitt and Schmidt (1967)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Smith et al.(1985)	도입기	고성장기		성숙기	
4 단계	Quinn and Cameron (1983)	모험단계	결집단계	공식화, 통제단계		적응, 정교화 단계
	Kazanjian(1988)	개념화 및 개발	사업화	성장		성숙
5 단계	Greiner(197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Lewis and Churchill (1983)	존재	생존	성공	이륙	자원성숙
	Miller and Friesen(1984)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재성장기	쇠퇴기
	Scott and Bruce(1987)	도입	생존	성장	팽창	성숙
	Lester et al.(2003)	창업기	생존기	성장기	재도약기	쇠퇴기

※ 각 연구별로 제시한 단계를 정리하였으며, 연구자들이 구분한 성장단계가 상응되는 것은 아님

자료:중소기업연구제43권 제1호.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이재석외2)

나. 중소기업의 성장모델

그라이너(Larry E. Greiner)는 창업 이후의 기업을 기업규모의 확대와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 다음의 [그림]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따른 진화와 변혁에 대처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6. 기술창업의 성장 모델

나. 중소기업의 성장모델

리더십 위기

1단계

생산량과 기업규모가 커지고 기업 구성원의 크기도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기법을 보유하지 못하여 위기를 맞게 된다.

=> 고용경영자로 하여금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문제점 해결

자치력 위기

2단계

고용경영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지나친 조정통제가 관리와 하부조직 관리자에게 불만을 초래 => 하부조직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

통제력 위기

3단계

집권적 조직에서 분권적 조직으로 전환되어 능률 향상
하부조직의 경쟁적인 능률 향상은 문제점을 야기시킴
(예. 사업계획, 기술, 재정, 인력문제 등을 상호조정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려 함)
=> 상호조정에 의한 성장을 꾀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

관료화의 위기

4단계

부서간의 조정과 통제를 원활히 하는 기획에 중점
지나치게 스텝기능이 강화되면 라인과 스텝간의 신뢰성 상실,
제도나 기획이 효율성면에서 낮을 수 있고 스텝의 지나친 간섭에 라인 반발
=> 조직구성원의 협동관계를 유발하는 기법과 프로그램을 시도해 문제해결

미지의 위기

5단계

라인과 스텝간의 공동작업 및 협동을 통한 성장을 이루는 단계
그러나 이 단계는 지나치게 창의성과 혁신성을 요구하게 되므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느끼게 됨 => 긴장,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 근무제도를 확충
하여 문제점 해결

나. 중소기업의 성장모델

그라이너(Larry E. Greiner)의 성장모델 요약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성에 의한 성장 - 창업자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토대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설정을 통한 성장 -고용경영자의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양에 의한 성장 -하부조직의 의욕확대로 인한 능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조정에 의한 성장 -부서간의 조정과 통제의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에 의한 성장 -라인과 스태프의 공동작업 및 협동을 통한 성장
관리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관리기법의 미보유 -자원을 제조와 판매의 극대화에 집중 -비공식 의사결정 -기업가적인 리더십 스타일에 의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활동이 각 기능별로 분화 -경영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생산성이나 능률이 강조되는 관리형태 -고용경영자의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부 조직에의 권한위임 -분권적인 조직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된 제품의 통합노력 -공식적 기획제도 도입 -전사적 예산통제 -종업원의 사기제고 방안 등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다양성 인정 -스태프의 수를 줄이고 조직의 공통의식창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제공 시도 -다양성을 활동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나 테스크 포스 같은 조직을 활용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십 위기 - 리더십의 부족이라는 불만 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력 위기 -지나친 조정통제로 인한 불만초래 - 자치권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력 위기 -부문간 독자적인 업무수행 - 최고경영층의 전사적 통제 및 중앙집권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료화의 위기 - 지나친 스태프기능의 강화로 라인과 스태프간의 신뢰성 상실 - 문서화와 같은 불필요한 업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지의 새로운 위기 -지나친 창의성과 혁신성의 요구로 극심한 피로를 느낌
해결책	고용경영자의 고용	하부조직에 자율성과 권한의 부여	상호조정에 의한 성장도모	협동관계를 유발하는 기법과 프로그램 시도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과 근무제도 개선

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관리요소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관리요소
기술	-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신제품의 개발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 정부의 R&D지원정책을 활용한 연구개발 활동 - 연구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생산	- 생산요소(생산설비, 작업자, 원재료의 품질 수준 등)의 적절한 조합 - 지속적인 원가절감활동 및 품질관리 활동 - 경험이 많은 숙련기술인의 확보 및 관리 -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인력	- 필요한 인재의 채용 및 적재적소의 배치 - 인재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의 운영 - 구성원과의 갈등 해결 및 사기진작(외국인 근로자의 포용과 이해 등) - 기업 특유의 기업문화 형성 등
자금	- 필요한 자금의 산정(시설자금, 운영자금, 창업준비자금, 개발자금 등) - 자금의 조달방법(자기자금, 금융권차입자금, 정책자금, 정부출연자금, 투자유치 등) - 자금의 조달시기, 조달조건(이자율, 상환시기, 보증료 등), 조달처 등의 결정 -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케팅	- 대기업에 납품 : 대기업과의 정보공유, 납기, 품질, 비용 등의 고려 - 소비자과 직접거래 : 목표시장 및 고객의 설정, 시장세분화, 포지셔닝, 촉진전략 등 - 수출 : 수출방법(직접수출 및 간접수출), 계약의 형태(라이센싱, 프랜차이징, 계약생산, 관리계약, 턴키계약, 기술이전 등), 해외투자 형태(단독, 합작 등), 시장진입전략(기업요인, 제품요인, 시장-현지국-요인, 본국요인 등)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은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술창업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문헌연구(길운규외 2인)”에 따르면 창업자의 특성, 창업전략, 조직의 특성, 기술력, 창업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구분	성공요인
창업자의 특성	창업자의 경영방식(경영노하우) 창업자의 유사 경험 창업동기 및 기업가 정신
창업전략	제품 전략 시장 전략(마케팅 전략) 자금조달 전략
조직의 특성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조직의 문화
기술력	기술자원 기술전략
창업환경	산업 및 시장 환경 정부의 정책 및 지원

가. 기술창업활성화의 필요성

첫째, 선진국의 기술패권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차원과 국가 차원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높은 경쟁지위를 유지하던 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상태
- 미래 먹거리를 만들 성장동력의 창출이 시급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비즈니스모델의 출현 필요

둘째,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생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초기 생존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존과 함께 도약의 가능성이 크다.

셋째, 규모의 성장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

- 기술의 축적효과와 함께 거래선이 다변화되면 상대적인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서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해진다.
- 기술력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안정적인 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산업 전반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었고 추월위기에 이른 것도 많음
- 경제적 힘을 전략무기화하여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과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무기로 활용해야 함.

〈자료:기술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방안.한정화〉

나. 기술창업발전의 장애요인

(1)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고급 기술인력의 스타트업 시장 참여 유인 요인이 약하고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기술창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투자에 의한 자금조달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스타트업 이후 스케일업 단계의 투자자금조달 시장이 취약
- 실패를 경험한 후 재도전이 어렵다
- 신용불량이 되면 신용회복이 어렵고, 신용회복이 된다고 해도 과거의 기록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제약을 받게 된다

(2) 실패의 위험에 비해 보상의 잠재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 매출증대를 통한 사업성과 보상잠재력이 높지 않은 것은 내수시장의 한계 때문임
- 초기 창업에 성공한다 해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성장이 정체된다
-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비용과 위험으로 인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면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 <자료:기술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방안.한정화>

8. 기술창업의 활성화방안

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1) 시장확대

-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중요
- 내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추구해야 한다
- 공공구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해외 진출을 하는 방식도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 규제개혁을 통하여 혁신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 기술기반 창의혁신 제품의 판로지원을 해야 한다.
- 우수 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구매조건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2) 투자확대

- 엔젤, 클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창업 후 단기간에 자금 회수를 통하여 2차, 3차 도전에 나서도록 하는 연속 기업가(serial entrepreneur)의 성공사례가 확산되어야 한다.

-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코스닥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거래소 시장의 일부가 아닌 기술주 거래에 대한 전문 시장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누적한도 폐지, 전매금지 폐지, 클라우드 펀딩 예약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 기업형 벤처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투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자 대주주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민간 투자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창업자금 조달이 융자나 보증보다는 투자에 의해 조달하도록 창업금융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
-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콘텐츠를 해외에 유통시키기 위한 현지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3) 기술사업화지원

- 기술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시장에서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창업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 정부는 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학의 기술스타트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창업선도대학과 기업가센터를 활용한 교수·연구원 창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경력 목표에 맞는 연구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학원생이나 포스트닥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로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화하거나 직접 창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지원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기술성과의 부당한 탈취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일감 몰아주기, 보복조치 등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 발생시 피해와 관련한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법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상담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 중소기업중앙회나 상공회의소가 고발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5) 실패비용의 완화

첫째, 연대보증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 현재 정책금융은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채무조정 범위 확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성실경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한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셋째, 낙인효과를 완화해야 한다

- 향후 재도전기업인에 대해 신용불량정보 조기 삭제 및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재기기업인의 조세 채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조세채무는 신용회복, 회생·파산 시에도 면책되지 않아 재도전에 걸림돌로 작용

다섯째, 기업회생·재도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중소기업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 기업가적 역량강화

- 예비 창업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 본글로벌(born global) 사업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글로벌이란 창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인력, 기술의 글로벌 소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IP(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우수 기술 전문인력의 기술스타트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에 의한 보상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기술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방안.한정화〉

Ⅱ. 기술창업과 기업가정신

1. 기업가의 개념과 특성
2. 기업가정신의 개념
3.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4. 기업가정신 특질의 내용
5. 글로벌기업가정신(GEM)
6.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업가정신
7. 기업가 정신의 확산

가. 기업가의 개념

기업가란 기업(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의 개념은 획일적으로 정하여진 것이 없으며 기업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어 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특질의 내용
OECD		경제의 변화와 성장의 주체로서 혁신적 아이디어의 생산· 확산· 활용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주체
경제학자	칸티용 R. Cantillon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경제발전을 담당하는 사람 -위험부담을 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
	세이 J.B.Say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부터 생산성이 높고 보다 많은 수익을 내는 부문으로 이전하는 사람
	슈페터 J.A.Schumpeter	창업의 과정을 이용하여 자원의 신결합과 신 사업방법으로 현상유지를 흐트러뜨리는 혁신가이다.
	드러커 P.F.Drucker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며 또 그것을 기회로 이용한다. -혁신은 기업가의 특수한 도구로서 기업가는 이것을 통해 변화유도와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한다.

나. 성공한 기업가의 주요특성

성공한 기업가가 갖는 주요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성	주요 내용
1. 비전의 설정과 공유	사업의 수행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돈은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며 주목적이 아니다.
2. 강한 성취욕구와 성장욕구	권력욕구보다는 강한 성취욕구에 의하여 행동하며 새로운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간다.
3.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신속한 피드백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개발해 나가며 수행결과를 살펴보고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4. 계산된 위험의 감수	신규사업과 목표설정을 통한 도전과 운영에 적극적이다.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계산하고 결정하며 투자방법 등의 조정을 통하여 위험을 공유하거나 분산시킨다..
5. 강한 책임의식과 적극성	자신이 계획한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다.
6. 기회포착 및 목표지향성	좋은 기회를 포착해 내는 뛰어난 사업감각과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7. 신속한 결단과 인내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지속적인 변화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천한다, 일의 결과가 장기적인 경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8. 창의성과 혁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필요를 창출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
9. 고도의 정직성과 신용	강한 직업윤리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업활동을 한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10. 낙관적인 자세와 자유 실천의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한다. 항상 앞서 나가려 하며 자율적,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가. 기업가정신의 개념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정의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 정의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 창업역량, 企業家精神(기업가정신), 起業家精神(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 창업과 관련한 학문을 주도하는 학자들은 (entrepreneurship)을 혁신적 창업자의 활용 또는 혁신적 과정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창업자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활동과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박춘엽, 1997)
- Drucker(1985)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개인의 성격이 아닌 경제와 사회에 대한 개념과 이론, 행동 양식이라고 하면서 이를 소유경영자 (Owner-Management)와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 Schumpeter(1934)는 경제발전의 생산 활동과정을 창조적 파괴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조의 활동으로 보았으며, 창업역량의 핵심요소로서 창조성과 실천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창업자 사고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Kirzner(1978)에 의하면, 창업역량은 사업기회를 창조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인지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창업자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키워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시장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고 변화의 추세를 읽어내는 전략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통하여 창업자를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규동, 2014; 이용희·박수홍, 2014; 이용희 외, 2016)
- 企業家精神(기업가정신)과 起業家精神(기업가정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구분	해석
企業家精神(기업가정신)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기업가(Business man 또는 Owner)의 정신으로 해석
起業家精神(기업가정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Entrepreneur)의 정신(精神, 체화 된 의식)으로 혁신적 사고와 새로운 가치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2. 기업가정신의 개념

가. 기업가정신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창업역량, 企業家精神(기업가정신), 起業家精神(기업가정신)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는데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특질의 내용
나이트(F.H.Knight)	불확실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
숨페터(J.A.Schumpeter)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과정을 추구하는 것
미제스(L.A.Mises)	알려지지 않은 수단을 탐색하며,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려는 미래지향적 행동을 추구
커즈너(I. Kirzner)	알려지지 않은 이윤기회를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주관적 확신에 찬 기업가의 기민한 이윤 추구행위
스티븐슨(H. Stevensons)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
드러커(P.F.Drucker)	-변화를 당연하고 건전한 것으로 여기며 변화를 찾아내어 기회로 이용한다. -혁신을 기업가의 도구로 이용하며 기업가정신은 기질이 아니라 행동이다.
티몬스(J.Timmons)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내어 가치 있는 것을 구축하거나 창조하는 것
세이(J.B.Say)	-자본가와 달리 생산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이윤을 창출
카오(Kao)	-사업기회의 인지, 위험부담의 적절한 관리, 적절한 자원동원의 기술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 하려는 시도.
히스리치와브러쉬(Hisrich&Brush)	-위험부담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새로이 창조하는 과정
유럽연합(EC)	위험수용성, 창의성 및 혁신성을 새로운 조직이나 기존 조직에서 기업경영에 접목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정신자세와 과정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창업, 일인창업을 통한 창직, 기존 기업 내에서의 혁신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가.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 국내 유일의 공식 통계조사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기업가정신실태조사는, 기업가정신 수준의 결정요인을 파악·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 및 기업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현황 및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 개인편의 경우 기업가적 특성-역량-태도 및 의도, 기업가적생태계, 기업가정신의 인식 및 정부정책의 이해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업의 경우는 비전과 전략, 기업가적 특성, 문화와 구조, 운영체제, 기업성과, 조직의 기업가 정신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개인의 기업가정신	기업가적특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시장선도성/ 자율성/ 경쟁추구성/ 성취욕구
	기업가적역량	인지역량/ 대인관계역량/ 사업화역량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	대응방식/ 글로벌 마인드/ 공익실현/ 개인적 인식/ 사회적 인식
기업의 기업가정신	비전과 전략	CEO리더십/ 가치와 전략
	기업가적 특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시장선도성/ 자율성/ 경쟁추구성/ 성취욕구
	문화와 구조	참여와 노력/ 회사의 제도화/ 학습과 공유/ 점검과 보상
	운영체제	HRM프로그램/ 예산시스템/ 규정과 절차
	기업성과	제안성과/ 활동성과/ 사업성과
	기업가적 활동	사내조직지원/ 외부기업투자/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지원

〈자료 :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6차년도).2020-04-01 P15 요약〉

역량모델관점에서 기업가에 관한 정의 내용들의 개인적 측면의 특징과 비개인적 측면의 특질들로 분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특질의 내용
심리적측면	자율성욕구, 욕망, 지원 및 동조에 대한 낮은 욕구, 결단성, 결정력, 불굴의 인내, 성실성, 성취욕구, 공격성, 권력, 인지력, 혁신적 독립심, 내재적 통제위치, 자신감, 목표지향적, 창의성 혁신성, 열정, 야망, 실패에 대한 긍정적 사고, 책임추구, 자신감, 도전욕, 성장지향, 독립적, 기능공지향, 사회의 상식이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음, 높은 모호성 인내도, 자율성, 순응거부, 위험선호, 변화의 적극적 수용, 현재의 보유자원이나 자원의 부족에 연연하지 않고 열정과 헌신, A형 행동패턴 을 보임. 건강, 현실주의, 도전에 대한 매혹, 감정적 안정성,
능력(재능)및 스킬측면	인간관계, 의사소통능력, 기술적지식, 리더십, 새로운 사업 추진 (역량), 계산된 위험 감수, 탁월한 개념적 능력, 관리적 재능, 기업가적 역량, 기회포착을 할 수 있는 관리적 역량을 보유한 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동기 (모티브)측면	개인가치지향, 행복추구, 창조적 파괴,
하는일(기능)과 관련된 비개인적 측면	창의, 혁신, 중개, 기회 발견, 기회추구, 새로운 사업 추진, 위험감수, 솔선수범, 스스로를 고용, 확실한 가격으로 구매 하여 불확실한 가격으로 판매(업무/기능) 시장에서 교역, 사람들의 리더(지휘통솔 등 리더십 발휘), 자원의 관리자(관리행동,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아이디어 의 혁신자(혁신행동), 생산조정 생산성 더 낮은 영역에서 더 높은 영역으로 경제적 자원 이전, 지휘와 통제에 책임 있는 관리자(관리직무 담당) 불확실성을 감수, (기회포착)(관리) (소기업 발전)(관리자)

자료:중소기업연구제42권제2호. 기업가(起業者)의 20가지모습

가. GEM 연구가 1999년에 시작되어 2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기업가정신이 한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나. GEM 연구의 주요 목적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며, 분석결과의 국제적 비교이다.

다. GEM연구의 내용

- GEM 연구는 창업 및 기업가적 활동, 사내 혁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를 살피며,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글로벌 비교 연구로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연구이다.
- 또한 GEM 연구는 UN(United Nations)에서 정한 지속가능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현황 파악(SDG 1-빈곤퇴치, SDG 8-경제성장,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SDG 10-내부 불평등 감소)에 근거가 되는 기반연구 자료 조사를 제시하고 있어 연구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있다.

라. GEM 한국보고서의 요약

- 초기 창업 기업의 창업 동기를 보면, 경제적인 동기가 사회적 동기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이 은퇴(가장 오랜기간 근로한 직장을 그만 둔 나이를 은퇴로 보고 있음) 이후에 창업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 기업가는 우리 나라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인식된다고 응답하였다
-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낮은 국가로 GEM 글로벌 연구에서 주목받아 왔다.
- 기존 기업 내 직원들의 기업가적 활동, 즉 신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새로운 사업의 개발활동에 참여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전반에 대해 보통수준이다 라고 평가
-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 는 시장 역동성이며 가장 미비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초중고 단계의 교육 및 훈련으로 3.43점을 받았다
- 기업가정신 제반 여건을 평가하는 NECI지수는 54개국 중 15위를 기록(2019년)
- 기업가정신 교육 및 훈련, 정부의 정책 중 세금 및 규제, R&D 이전, 시장 진입장벽, 상업 및 서비스 하부구조 등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 물리적 하부구조, 시장 역동성, 정부의 정책 중 지원 및 관련성, 정부의 프로그램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2019 한국보고서〉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구분	주요내용
<p>개인의 기업가정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개인의 선천적인 기업가적 특질 보다는 후천적인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해 누구나 기업가(entrepreneur)가 될 수 있는 시대임 - 산업 사이클이 더욱 빨라짐에 따라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기존 일자리의 소멸 및 새로운 일자리의 탄생 등 일자리 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의 산업혁명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일자리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더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이 변화할 것(Schwab, 2016) -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요소기술을 활용한 미래유망분야 창업은 새로운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은 기업의 전유물 또는 기업으로 자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체를 혁신가로 잠재적인 기업가(entrepreneur)로 상정 - 제너럴리스트 보다는 자신만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유연한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주의와 경쟁 보다는 상호연결과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 -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이 내리는 선택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보유
<p>기업의 기업가정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기업가정신이 기존 자원을 활용한 혁신이었던 것에 비해, 수평적이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구조가 확대되면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의 기업가적 활동이 촉진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수익 창출 및 경영 효율성 증대의 관점이 아닌 인간·사회의 문제해결 및 가치창출의 관점이 중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의 혁신 활동은 '문제인식-해결방안 마련-사업화 및 실행-가치 창출'의 프로세스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기업가 개인과 기업 조직의 기업가적 역량(즉, 기업가정신)이라 할 수 있음 - 기업의 기업가적 역량은 '기회포착 및 동기부여 - 문제해결력 및 비전 설정 - 자원 활용 및 대응 능력 - 성장 추구 및 사회 기여'의 기업 혁신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대응 역량의 조합으로 설명되며, 이는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관련됨 - 기업은 익숙한 기술, 스스로 강점이 있는 기술 외에도 기존 지식 범위 밖의 향후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기술, 융합이 가능해 보이는 기술 모두에 지식을 갖추어야 함 - 법인(corporation)에서 연합(confederation)으로 변화를 준비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자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등 공급자 중심의 자원·유통 효율화 전략에서 사용자 중심의 체험·가치 극대화로 경영전략 변화

〈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의 의의와 방향.VOL218.과학기술정책연구원.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의 방향〉

구분	주요내용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으로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인간의 행위와 본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융합 및 해법의 적용이라 할 때,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매우 중요함 - 빠른 기술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람 중심의 기업가적 사고와 가치관이 필수적이 됨. 또한 개인의 기업가적 특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현하고 다원화된 고객 한명, 한명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기업가형 개인 (entrepreneurial individual)으로 인재 양성 방향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너럴리스트 보다는 자신 만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유연한 전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함 - 미래의 일은 개인에 초점을 두며,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에 기반 하여 각각의 장점을 결합시켜 내는 네트워크 속의 개인이 부각될 것임. 이에 상호연결과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
기업은 개방형 혁신 주체(open innovator)로 변화해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기술, 스스로 강점이 있는 기술 외에도 기존 지식 범위 밖의 향후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기술, 융합이 가능해 보이는 기술 모두에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혁신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수합병(M&A),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외부획득 전략이 유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자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등 공급자 중심의 자원·유통 효율화 전략에서 사용자 체험·가치 극대화로 경영전략 변화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완충망 (trampoline, 트램폴린) 역할을 해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주체들의 자생적 혁신을 이루어갈 때 정부의 역할은 혁신 생태계의 조력자 (coordinator)로서 개인과 기업의 안전망 혹은 완충망 역할을 해야 함

〈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의 의의와 방향.VOL218.과학기술정책연구원.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요약〉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는 힘〉

구분	주요내용
기업가들을 영웅으로 봄	- 기업가를 영웅시 하고 그들이 달성한 업적을 칭송한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 사업하기가 용이하다.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	- 경제성장으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만들어졌다.
서비스산업으로의 이동	- 서비스산업의 발달은 기업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 - 서비스 관련사업은 창업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업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기술발전	- 현대적 사무용기기의 발달로 가정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자적인 생활방식	- 자신이 원하는 근로시간, 사는 장소 등에 대해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E-커머스와 웹	- 정보의 바다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수많은 벤처기업이 탄생
국제적 기회	- 글로벌 경제로의 급격한 이전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중소기업경영론, Norman M. Thomas W. Zimmerer. 시그마프레스〉

Ⅲ. 창업관련 법규

1. 창업관련법규의 개념
2. 중소기업기본법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4.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5. 창업 및 회사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6.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 창업관련법규의 개념

가. 창업관련법규의 의의와 분류

○ 창업관련법규의 의의

- 창업관련 법규란 창업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대부분의 창업관련 법규의 내용이 회사의 설립과 창업의 절차 또는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창업관련 법규란 회사의 설립과 창업의 절차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포괄하여 창업관련 법규라고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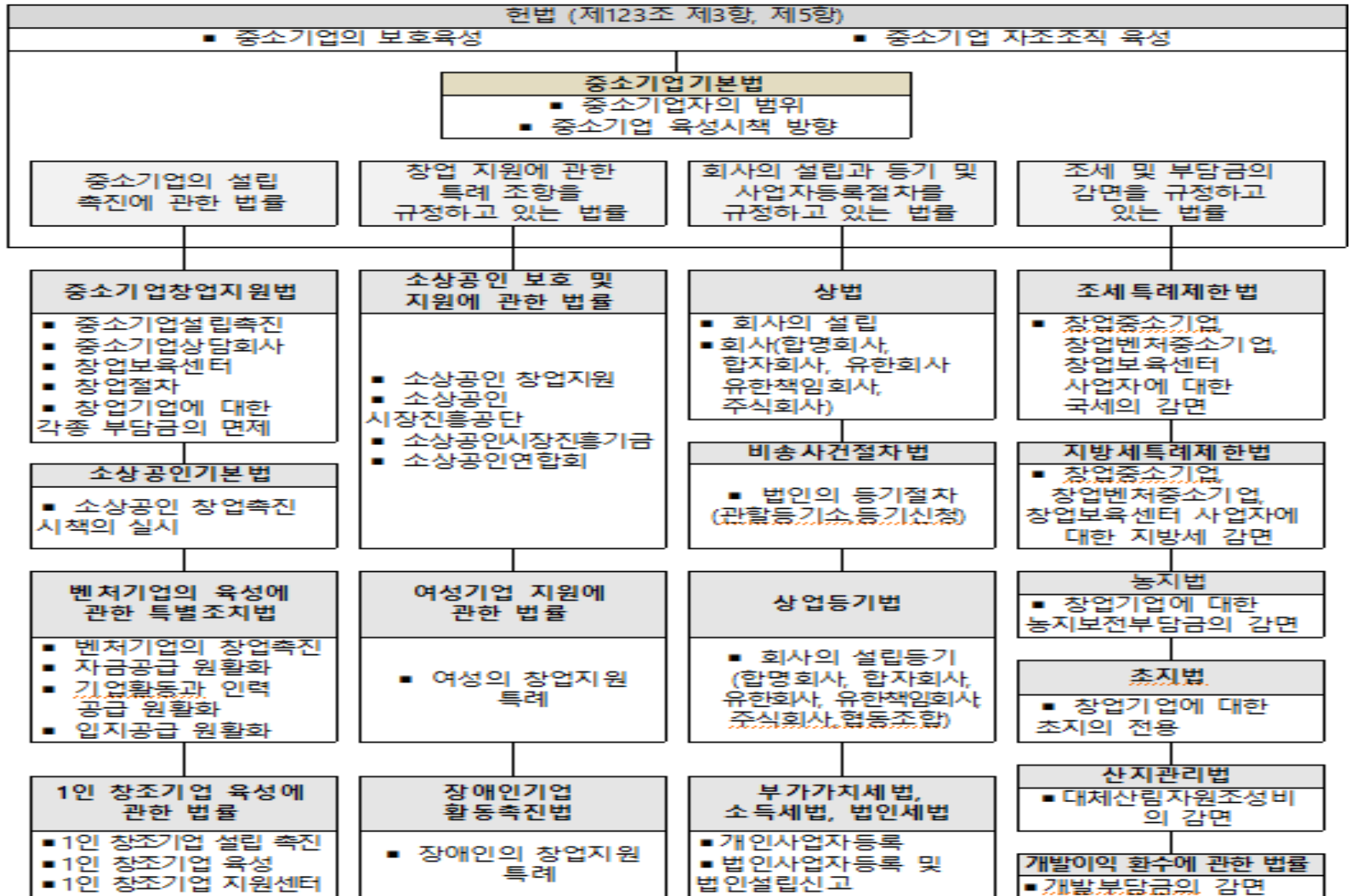
○ 창업관련법규의 분류

구분	법령명	창업관련 주요내용
1. 창업촉진시책의 실시근거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 육성시책방향
2.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의 설립촉진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창업촉진시책의 실시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인창조기업 설립 촉진 및 육성
3.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특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4. 창업절차 및 회사의 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상법	회사의 설립
	비송사건절차법	법인의登記절차
	상업등기법	회사의 설립등기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개인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설립신고
5.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지법	창업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초지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초지의 전용
	산지관리법	창업자에 대한 대체산림 조성비의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창업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면

○ 창업관련법의 분류

구분	법령명	창업관련 주요내용
1. 창업촉진시책의 실시근거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 육성시책방향
2.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의 설립촉진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창업촉진시책의 실시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인창조기업 설립 촉진 및 육성
3.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특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4. 창업절차 및 회사의 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상법	회사의 설립
	비송사건절차법	법인의 등기절차
	상업등기법	회사의 설립등기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개인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설립신고
5.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창업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초지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초지의 전용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창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
	개발이익환수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창업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면

< 창업 관련법의 체계 >



2. 중소기업기본법

가. 목적과 정의

○ 목적

-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SS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산업구조를 고도화
-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 시키는 것

○ 정의

구분	내용
1. 창업일	①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② 「소득세법」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	①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②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 :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	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4. 주식 등	① 주식회사 -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② 주식회사 외의 기업 - 출자총액.
5. 친족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6. 임원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 ②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외의 기업 -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가. 목적과 정의

○ 혈족과 인척의 범위

구분	내용
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
2.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경우
 - (2)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계산)이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 (3) 지배기업과 위(2)의 개인의 친족이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과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4.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2"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5. 자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6.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7.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가. 목적과 정의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보지 않는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6.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 기준일〉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2. 중소기업기본법

나.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1) 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자의 범위 요약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구분	중소기업 요건
1. 영리목적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갖출 것 2)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범위기준과 같으나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영§3①)

1.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영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최다출자자〉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다. 중소기업의 유예

1) 유예기간적용의 의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와 중소기업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면, 당해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도 일정기간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기업규모 확대 등에 따른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적용의 예외〉.(법§2③, 영§9)

-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 ② 중소기업의 유예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③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중소기업자의 의제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법§2④)

법령명	중소기업자의 범위
1)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산업기술 연구조합 ④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자 단체 중 그 구성원의 2/3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른 업종간의 정보와 기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3) 「중소기업은행법」 제2조제2항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마.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1) 중소기업여부의 적용기간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초과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 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 까지로 한다(영§3의3①)

2) 중소기업범위기준의 적정성의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영§3의3②)

3) 적정성의 검토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3의3③)

4) 세부적인 사항의 고시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영§3의3④)

바. 겸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정

하나의 기업이 둘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		내용
1) 주된 업종의 판정	관계기업 이외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관계기업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3)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		주된 사업이 정해지면 겸영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당해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주된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사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면

업종	매출액	규모기준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억	1,000억
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0억	800억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0억	600억
4. 교육서비스업	180억	400억
합계	630억	

<풀이>

1. 주된 업종의 판정 - 평균매출액이 가장 많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회사의 전체 매출액 630억
3. 주된 업종의 중소기업기준 - 600억
4. 판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용방법

1)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방법

-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

구분		매출액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로서 위“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창업, 합병,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
	창업, 합병, 분할일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매출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사례 1

2020년 3월에 창업한 기업으로 12월말 결산을 하는 기업의 경우

- 2021년 6월 현재의 매출액 산정방법은?

2021년 5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20년 6월 매출액까지를 합한 금액

- 2021년 9월에 산정하는 경우

2021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사례 2

- 2021년 3월 14일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매출액을 2021년 5월 1일에 산정한다면?

1개월의 사업기간을 보유한 달이 있으므로 4월 한 달 매출액에 12를 곱한 금액이 당해 기업의 매출액이 된다.

· 사례 3

- 2021년 3월 14일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을 2021년 4월 29일에 매출액을 산정 한다면?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46일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46으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당해 기업의 매출액이 된다.

$$\text{기업의 평균매출액} = (46\text{일 간의 매출액} / 46) \times 365$$

사.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용방법

〈적용 1〉 A기업이 2020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21년도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2021년 3월에 산정하는 경우 : A기업은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지만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2021년 2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20년 3월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 2021년 1월에 산정하는 경우 : A기업은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았으므로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인 10으로 나누고 다시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2〉 A기업이 2021년 3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21년 3월 31일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므로, 2021년 3월 5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인 26로 나누고 다시 3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3〉 A기업이 2021년 3월 20일에 창업한 경우, 2021년 4월 26일에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창업한 달의 다음 달이 1개월 미만이므로 2021년 3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인 37로 나누고 다시 3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자산총액의 산출방법

구분	매출액
1. 일반기업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2.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3. 외국법인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로 환산한 금액

(적용1)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상시 근로자 20명, 3년 평균매출액이 50억 원입니다. 2021년 7월 8일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6천억 원인 기업이 60%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A사는 중소기업인가요?

☞ A기업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충족하지만,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므로 2021년 7월 8일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사.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중소 기업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맞는 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아.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확인

1)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영§10①)

2) 중소기업 확인방법

가) 중소기업 확인서류의 제출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확인신청

중소기업확인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목적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

(2)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창업	<p>1)창업의 정의</p> <p>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않는 것을 말한다. (법§2제1호, 영§2①)</p> <p>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u>같은 종류의 사업</u>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③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⑤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⑥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p>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창업	2)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① 적용기준 :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영§2②) ②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영§2②) ③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 :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영§2③)
재창업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재창업의 범위는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법§2, 영§2의2)
창업자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법§2제2호)
재창업자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법§2제2의2)
초기 창업자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법§2제2의3)
사업 개시일	①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 법인설립등기일 ②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법§2제3호)
중소기업 상담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법§2제6호)
창업보육 센터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법§2제7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법§2제8호)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⑥「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법§3, 영§4)

- ① 일반유흥주점업 ② 무도유흥주점업 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④ 제①부터 제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4①)

구분	내용
창업지원계획에 포함될 내용	①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4②)
지원대상자	정부는 창업자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4③, 영§5②) 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② 창업대학원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④ 벤처투자조합 ⑤ 중소기업상담회사 ⑥ 창업진흥원 ⑦ 그 밖에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4④)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구분	내용
창업기업제품의 구매촉진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법§5의2①)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의 구분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법§5의2②)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5의2③, 영§5의8①)
단순 가공제품의 창업기업제품의 해당 여부	위의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영§5의8②)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개선권고 및 구매계획에의 반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법§5의2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그 이행의 점검을 위한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 창업기업의 확인 및 확인 취소

· 창업기업의 확인

구분	내용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p>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9의4①)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칙§5①)</p> <p>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한다.</p> <p>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p>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칙§5②)</p> <p>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중소기업확인서</p>
창업확인서의 발급	<p>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법§9의4②, 영§8의5②③)</p>
창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p>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을 받으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영§8의5①)</p>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의 재신청 제한	<p>창업기업의 확인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법§9의4③ 영§8의5④)</p>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 창업기업의 확인 및 확인 취소

·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구분	내용
창업기업의 확인취소 사유	중소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①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법§9의5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9조의5 제2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창업기업확인 취소를 위한 보고와 검사 등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법§9의5②)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시	창업기업 확인취소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9의5③)
청문의 실시	중소기업부장관이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44제1호)

· 창업기업확인에 대한 고시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영§8의5⑤) 현재 중소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법§9의5②)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구분	내용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	1) 창업보육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는 것. ①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 ②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시설 2) 영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칙§3) ①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소재지 ②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③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④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
지정신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인인 경우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④ 시설명세서
변경신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6②, 칙§4②) ① 사업자명 ②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④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⑤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지정취소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취소 또는 지원 중단사유	①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③ 증축·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을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칙§17) ④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한 경우(칙§17) ⑤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전문인력(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1호 관련)

경영분야	기술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7)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구분	내용
국유재산의 사용료의 감면	1) 국유재산의 사용료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법§6③, 영§7①) 2) 국유재산 사용료의 인상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위(1)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영§7②) 3)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6④)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1) 공유재산의 사용료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영§7의2①) 2)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위 1)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영§7의2②)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19의6)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 중소기업상담회사

구분	내용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	<p>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법§31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②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③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④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⑤ 창업절차의 대행 ⑥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⑦ 위 ①부터 ⑥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상담회사의 등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법」에 따른 회사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영§20①) ②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영 §20③) 3)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 4) 전문인력(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과 동일) 중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영§20②)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 중소기업상담회사

구분	내용
등록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사유	①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청문의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44)
용역비 지원	(1)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2) 지원 금액 해당 용역대금의 100분의 80이내 (3) 용역대금의 지원신청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용역대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 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영§21②, 칙§13) ① 용역결과보고서 ② 용역대금계산서 ③ 용역계약서사본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9)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39의5①)

구분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재택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39의5③)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법§29의3) ①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②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③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go.kr)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p>목적</p>	<p>-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p>
<p>정의</p>	<p>① “벤처기업”이란 <u>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u>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p> <p>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p> <p>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u>벤처기업</u>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u>법제18조</u>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p> <p>④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p> <p>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u>법제18조의4</u>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⑥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p> <p>⑦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u>법제11조의2</u>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p> <p>⑧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u>법제17조의2</u>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⑨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u>법제16조의8 제1항</u>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p>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벤처유형	요건	
벤처투자유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영§2의3①2) ①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00만원 이상일 것. ② 해당 기업의 자본금 중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일 것.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table border="1"> <tr> <td>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한국벤처투자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9. 한국산업은행 10. 중소기업은행 1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td> <td>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14. 농식품투자조합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7.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 19.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td> </tr> </table>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한국벤처투자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9. 한국산업은행 10. 중소기업은행 1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한국벤처투자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9. 한국산업은행 10. 중소기업은행 1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14. 농식품투자조합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7.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 19.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유형	요건
연구개발 유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영§2의3①2) ①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 해야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보유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②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이상으로서 중소기업 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영§2의3⑤) ③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것(영§2의3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법§2의2①)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2의3⑪)
예비벤처 유형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 .(「벤처기업 확인요령」§2)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산권의 출자 특례〉

구분	주요내용
현물출자대상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을 포함한다.
현물출자시 기술평가	법 상 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의 내용과 현물출자 이행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감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의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상법」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하는 것으로 본다.
기술평가기관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기술신용보증기금 ③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⑤ 기술표준원 ⑥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⑦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⑧ 그 밖에 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특례〉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상법」제5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16의5③)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

구분	주요내용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부여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16조(교육공무원 등의 창업 시 휴직허용) 또는 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 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 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법§16의7①)
휴직·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부여	휴직·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법§16의7①단서)
전용실시권 부여제외	전용실시권의 부여에 대한 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법§16의7②)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셜벤처기업〉

구분	주요내용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법§2⑩, 법§16의8①, 영§11의4①) ①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②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③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것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법§16의8②) 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②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③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16의8③)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종합정보망인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구분	주요내용
대상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법§18의3①)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특례내용	- 「건축법」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18의3①)
시장, 군수의 공장등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18의3②)
건축물에 대한 시설군의 분류	-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법§18의3③) -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제4항제2호에 따른 산업 등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건축법시행령제14조제5항제2호)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확인 및 취소 등〉

구분	주요내용
확인요청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벤처기업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25①, 칙§8①)
확인결과의 통지	① 벤처투자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연구개발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③ 혁신성장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일부터 3년
확인취소 요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②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영§18의6②)
이의신청기한	확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결과의 통지	① 이의신청을 한 자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일 ② 이의신청을 한 자가 연구개발유형 또는 혁신성장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법§24①)

- ①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행위
-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이 해당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 ③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 ⑤ 유한회사의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3.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p>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p>1인 창조기업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p>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p>	<p>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u>3년간</u>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p> <p>〈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p>	<p>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③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④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②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③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④ 교육훈련 지원 ⑤ 기술개발 지원 ⑥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⑦ 해외진출 지원 ⑧ 홍보사업 등 ⑨ 금융 지원 ⑩ 전담기관 지정 등 ⑪ 조세에 대한 특례 ⑫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의 완화
---------	--

라. 소상공인 기본법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창업촉진 및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번호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창업 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p>주요내용</p>	<p>(1)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②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③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④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2)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지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세의 감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p> <p>(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p> <p>(4)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p> <p>(5)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및 보조금,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사항</p>

4. 창업 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p>주요내용</p>	<p>(1) 여성의 창업지원특례</p> <p>①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p> <p>②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u>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u>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p> <p>(2)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p> <p>(3) 기업의 자금 지원시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우대</p> <p>(4)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지원사업실시</p> <p>(5)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p> <p>(6)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u>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한다.</u></p> <p>(7) 협회는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u>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u>를 설치할 수 있다.</p> <p>(8) 협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세제지원</p> <p>(9) 여성기업의 확인제도</p>

4. 창업 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분	내용
1.상법상 회사	-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 최대출자자란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
2.개인사업자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협동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1.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2.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3.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4.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4. 창업 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의 정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분	내용
1. 상법상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회사대표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2.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2.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3.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5. 창업 및 회사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상법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설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상업등기 - 제1편 제6장 ② 합명회사의 설립 - 제3편 제2장 제1절, ③ 합자회사의 설립 - 제3장, ④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제3장의 2 제1절, ⑤ 주식회사의 설립 - 제4장 제1절, ⑥ 유한회사의 설립 - 제5장 제1절
비송사건 절차법	법인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가)설립등기의 신청자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인의 정관 ②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④ 재산목록
상업등기법	-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법인의 등기절차(제4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가가치세법	- 개인 및 법인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득세법	- 개인부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인세법	- 법인부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법인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률명	구분	주요내용
조세특례 제한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창업관련 주요내용	<p>(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p> <p>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p> <p>②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p> <p>(2) 인지세의 면제</p> <p>(가) 면제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p> <p>(나) 면제대상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한다</p>

법률명	구분	주요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
	창업관련 주요내용	<p>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법제58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 ②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및 경감 ③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④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 대한 종과배제 등

법률명	구분	주요내용	
농지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 	
	창업관련 주요내용	〈창업자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	감면기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 하는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3호 쿠목 11)]			
초지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草地)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축산진흥에 이바지함 	
	창업관련 주요내용	〈창업자에 대한 초지의 전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6.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법률명	구분	주요내용
산지관리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
	창업관련 주요내용	<p>〈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p> <p>(1) 대상 :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p> <p>(2) 감면금액 : 대체산림조성비를 100% 감면</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창업관련 주요내용	<p>〈개발부담금의 면제〉</p> <p>「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p>

IV. 기술창업의 구상 및 사업타당성분석

1. 기술창업의 구상
2. 사업타당성 분석

1.창업자분석

창업자분석은 창업자 의 강점과 약점, 투자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업가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분석 항목	분석 내용	
강 · 약점 분석	강 점	창업자의 사업수행에서의 강점을 분석
	약 점	창업자의 사업수행에서의 약점을 분석
투자능력 확인	자기자본 확보상태	총 소요자금 중 자기자본 확보정도
	추가자금조달능력	차입 및 투자유치 등 추가자금 조달능력
사업수행 능력평가	창업자의 자질	기업가정신, 통찰력, 창조력, 실행력, 리더십, 설득력, 의지력, 정보활용능력, 판단력 등
	경험 및 지식	창업관련 분야의 경험, 전공 및 학습사항, 보유자격, 보유기술, 연구개발실적, 인적네트워크 등
	경영관리능력	창업멤버의 구성 및 조직관리 능력, 조직유지능력, 경영기획능력 등

2. 사업아이템의 탐색

가. 사업아이템의 탐색방법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분야 나 잘 알고 있거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또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사업아이템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아이템의 탐색방법은 제품탐색법과 욕구탐색법이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제품탐색법	기존제품의 탐색	- 기존 제품 또는 성능 등의 일부를 변경한 제품을 기존 시장 또는 신시장에 적용하는 방법
	신제품의 탐색	- 신제품을 개발하여 기존 시장 또는 신시장에 적용하는 방법
욕구탐색법	- 외적인 환경요소와 창업자 개인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아이템의 선정방법	

나. 사업아이템의 적합성 판단

유형	내용	성공가능성
신제품을 기존시장에 판매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수요가 있는 기존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	높음
기존 제품을 신시장에 판매	기존 시장에서 수요가 검증된 기존 제품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	높음
신제품을 신시장에 판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판매하는 형태(거액의 시장진입 비용 필요)	낮음
기존제품을 기존 시장에 판매	기전 제품을 생산하여 기존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치열한 경쟁시장)	낮음

3. 특허검색

가. 특허검색의 필요성

필요성	주요 내용
1. 특허의 출원	1.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2. 자신의 발명이나 아이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개량설계, 회피설계, 특허매입 등의 전략수립 및 시행
2. 창업아이디어의 발굴	1. 모든 기술분야의 체계적인 정리로 광범위한 사업아이템 정보 획득 가능 2. 상세한 설명, 도면 등 기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창업아이디어 발굴에 유용
3. 연구방향의 설정	기존 특허를 통한 기술의 존재여부 및 기술현황의 파악을 통한 연구방향 설정에 유용
4. 시간 및 비용의 절감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낭비를 예방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단계별 특허조사내용

단계	조사내용
기획단계	관심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동향 및 권리동향 파악
연구개발단계	주기적인 최신 특허정보의 조사를 통하여 연구방향의 확인 및 문제해결 아이디어의 획득
개발완료단계	타인의 선행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를 검토하여 특허청구 권리범위의 설정 및 조정

다. 특허검색 시 유의사항

필요성	주요 내용
1. 검색키워드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키워드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에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어구이며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대표하는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 그 주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키워드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요한 건이 누락되거나 추출된 건수가 많아져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검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색키워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기술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키워드 작성에 있어 해당 기술이나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키워드 설정이 능숙하다 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잘못 이해할 경우, 결과물이 실제 원하는 것과 전혀 상이한 것이 될 수 있음
3. 동의어, 유의어를 감안하여 키워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문헌에 사용되는 기술용어는 기술의 변화 또는 작성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표기로 이루어지므로, 동의어, 유의어, 유사어 등을 감안하여 키워드를 선정하여야 함 ◦ 특히, 함축적 표현, 작성자에 따른 표현상의 차이, 의미상 차이, 외국어 표기, 오타자 등 까지도 감안하여 검색이 이루어져야 함
4.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용	<p>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에는 국내·외 특허, 상표 등의 정보가 DB로 구축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검색할 수 있음(http://www.kipris.or.kr)</p>

라. 키워드 선정 시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1. 표현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워드가 “TV”인 경우 유사한 단어인 “티비, 텔레비전, 텔레비전, 테레비전, 테레비, 티브이”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특허검색에서 유사어나 동의어로 넣어야 하는 키워드
2. 의미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키워드와의 연산자 조합을 통하여 정확한 의미를 부여 ◦“배”라는 단어의 예를 들면,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배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3. 외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를 키워드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단어의 단수, 복수형이나 변화형까지도 고려하여야 함 ◦하이픈(-) 문자의 사용 등에 유의
4. 오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명세서에도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특허를 찾기 위해서는 특허명세서에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까지도 고려되어야 함 ◦오류 중에는 의도된 오류도 많은데, 자신의 특허가 가급적 검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타자를 사용하기도 함

4. 소비자 및 시장 검토

가.소비자 검토

-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사업수행의 출발점이나, 창업자들은 보유기술 만 믿고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없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과신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실패하게 됨
-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구매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여 사업의사결정에 반영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지역의 문화, 전통, 사회규범, 의식기준,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등
개인적 요인	연령과 생애주기, 직업과 소득, 성별과 라이프스타일 등
심리 도식적 요인	-동기(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자아실현 등) -태도(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학습된 선호 경향) -경험(소비자의 경험) -개성(사교성, 자율성, 사회성, 적극성, 과시성 등)
상황적 요인	커뮤니케이션 상황, 구매 전 상황, 구매 및 소비상황, 구매 후 상황 등

4. 소비자 및 시장 검토

나.시장 검토

- 사업아이템과 관련이 있는 시장의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을 검토할 수 있다.
- 시장의 검토과정에서는 계획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규모와 매출액 등의 추정을 위하여 과거의 수급실적, 대체품의 출현가능성, 소비자의 특성 및 소비성향, 유통구조 및 경쟁관계, 국내외 시장의 가격구조 및 추세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기존시장의 검토	사업아이템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존 시장을 분석하여 시장진입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신규시장의 검토	사업아이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시장을 분석하여 진입가능여부를 검토한다.

1. 사업타당성분석의 개요

가. 사업타당성분석의 개념

- 사업타당성분석이란 계획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활동
-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 분석, 검토하여 사업추진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활동

나. 사업타당성분석의 필요성

구분	주요 내용
문제점의 파악 및 대안선정	창업자가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제약요소를 파악하고 대안을 선정할 수 있다.
사업 준비기간의 단축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에 기여	창업자가 창업하려는 사업의 시장성, 기술성, 자금조달능력 등 세부사항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준비기간의 단축과 효과적인 사업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수익성의 파악	창업자가 창업하려는 사업의 수입과 비용의 예측을 통하여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경제성분석	계획 사업에 대하여 예측된 수입과 비용을 기초로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공가능성 판단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제 3자적 입장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공률 제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창업의사결정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사업계획수립근거의 획득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

2. 사업타당성분석의 절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절차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타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타당성분석의 절차는 순차적, 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 있다.

절차	주요 내용
1. 사업의 파악과 자료의 수집	평가대상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필요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사업타당성분석의 범위와 방법의 결정	주어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분석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사업자 및 창업팀의 사업수행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한다.
4. 시장성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시장을 발견하고, 분리,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판매예측을 한다,
5. 생산기술분석	계획제품에 대한 생산가능성과 품질, 성능, 기술 및 제약조건,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물적, 인적요소를 파악하고 관련원가를 추정한다.
6. 재무분석	계획사업에 대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분석하고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산출한다.
7. 경제성분석	계획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8. 민감도 및 위험요소분석	계획사업의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예측변수를 기초로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계획사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계량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에 포함시킨다.
9. 종합결론	상기분석내용을 근거로 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발견하고 계획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제시한다.

3.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사업자 및 조직구성원의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적합성의 평가

구분	주요 내용
적성 및 자질 (선천적 능력)	1. 모험심, 창의성 2.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3. 리더십, 판단력, 실행력 4.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체력 5. 꿈과 열정
경험 및 지식 (후천적 능력)	1. 창업관련분야에서의 경험 2. 학문과 지식 3. 창업자의 자격, 사회적지위 4. 창업과 관련한 인과관계 5. 집념과 의지력
업무수행능력 (경영능력)	1. 가정유지능력과 가족의 지원정도 2. 조직의 구성 및 통제능력 3. 서비스 및 기술혁신 능력 4. 경영/경제적 환경적응능력 및 분석, 의사결정능력 5. 미래경영전략수립능력
사회적능력	1. 신용 2. 대인관계 3. 정보수집능력(네트워크) 4. 설득력 5. 평판

4. 시장성 분석

가. 시장성분석의 목적

- (가)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 (나) 미래수요 예측
- (다) 유통경로 개선 내지는 유통경로 발굴
- (라) 마케팅전략의 수립
- (마) 최종목표는 계획제품의 최종예상매출액을 파악하는 것

나. 시장성분석의 과정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시장성분석의 목표 설정	1) 시장성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목표를 설정하는 일 2) 계획제품의 종류, 원료, 용도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3) 시장성 종합평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시장성 분석의 최종 목표인 수요예측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신제품개발 정보의 수집, 판매촉진계획의 수립, 유통경로의 개선
(2) 시장성분석의 계획 수립	1) 시장성 분석 항목의 범위와 수준의 결정 2) 시장성 분석의 자료수집 범위, 자료 수집처 및 자료 수집 방법 등의 결정 3) 분석 항목별 소요인력, 분석기간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4) 시장성 분석 기법의 결정 5) 시장성 분석의 일정계획 수립

나.시장성분석의 과정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3)시장성 분석 항목의 결정	1) 전반적인 시장동향의 분석 2) 계획제품의 특성 및 경쟁력 분석 3) 계획제품에 대한 미래수요 예측 4) 시장 및 제품의 환경분석과 판매전략의 수립
(4)시장조사 및 분석	1)분석 항목의 범위와 수준결정 - 조사자의 참여 수와 능력, 조사자금의 크기, 분석기간 등을 고려 2)자료수집범위, 수집처 및 수집방법의 결정 - 정부, 금융기관, 연구소, 협회, 조합 등의 통계자료, 각종 연감, 보고서 등 - 설문조사, 면담, 전화면담 등 3)시장분석기법, 수요예측방법의 결정 -판단예측법, 설문조사예측, 시계열분석법, 상관분석 등 4) 조사자료를 근거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시장성 분석 -객관적인 해석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5) 판매계획 및 판매전략을 고려해서 시장성을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름 • 계획기간 내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도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경쟁업체와 경쟁하여 향후 점진적인 시장점유율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계획기간 내에 목표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
(5)시장성평가(분석 및 해석)	1)사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름 2)계획기간 내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도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경쟁업체와 경쟁하여 향후 점진적 시장점유율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 4)계획기간 내에 목표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

다.주요분석항목

구분	주요 내용	
(1)제품시장 동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장의 동향과 특성을 조사하고 이해 • 동종제품(대체제품) 및 유사경쟁제품 또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동향과 경쟁상황, 소비자성향 분석 	
	구분	주요내용
	1)시장특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과 산업의 일반적 성격 • 주요 수요처 • 유통구조 및 특성(유통경로단계, 유통과정, 마진) • 판매조직의 특성 (영업방식, 영업형태, A/S, 판매과정, 판매방식의 강약점, 문제점) • 판촉방식(광고방식, 광고형태, 영업전략)
	2)시장규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제품, 대체제품, 유사제품의 과거 수급실적 분석 • 수출입 실적 분석 ※ 지역, 조사소비자그룹, 측정단위,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화 ※ 지역, 영역별 연령이나 소득 등의 구분에 따른 고객별 잠재수요의 추정)
3)소비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소비형태 및 구매동기(정기구매, 일시구매, 재구매의 순환주기, 1회의소비 단위) • 소비자 구성 분포 및 변화추세(지역별, 연령별, 성별) • 소비자성향 변화추이 (구매발생동기, 소비자의 수요자극요소 및 경향) 	

다.주요분석항목

구분	주요 내용		
(2)제품경쟁력 분석	- 경쟁력의 유무에 따라 시장에서의 진입 및 퇴출이 결정됨 - 계획제품 및 사업이 제품수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분석 후 사업의사결정 필요		
	구분	주요내용	
	제품특성과 강/약점 분석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기능, 특성, 품질, 기술성, 브랜드보유여부) •제품의 품질경쟁력 비교(강/약점) ※객관성이 중요(소비자에 대한 직접조사 필요)	
	제품의 수명주기분석	도입기	신제품개발/신제품 수용여부 불확실, 초기 투자자본 필요 판매부진/손실가능성 높음, High Risk-실패기업 많음
		성장기	매출의 증가 및 이익의 상승, 경쟁자의 대거진입
		성숙기	매출성장률의 정체, 이익폭의 감소, 현금흐름 양호, 시장구조 안정화
		쇠퇴기	판매량의 지속적 감소 및 이익의 제거, 대체제품의 등장. 제품경쟁력 상실
경쟁기업의 분석	•경쟁기업의 규모와 실적 비교 •기술수준과 신제품개발능력, 제품생산능력 •잠재적 대체상품 및 경쟁기업의 출현 가능성		
원가 및 가격 분석	•제품의 원가분석 •제품의 가격 및 가격경쟁력 분석 •향후 국내외의 가격추세분석		

다.주요분석항목

구분	주요 내용		
(3)제품수요예측 분석	-시장성분석의 최종 목표 〈수요예측의 분석항목과 조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장의 크기 및 점유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시장의 크기와 변동 추이 분석 • 주요경쟁업체 시장점유율과 보급율 분석 •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 의한 시장 확보가능성 분석 	
	수요변동의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황기의 수요변동 예측 • 계절별 제품의 수요변동 경향 • 기타 제품의 수요변동요인 분석 	
	제품의 수요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의 마케팅전략 및 관련 비용의 분석 • 각 제품의 유통구조 및 매출현황(온라인/오프라인의 점유형태 등) • 촉진전략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 • 분야별, 연도별, 제품별 판매가능량 추정 	
매출액의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판매량 × 가격 		

라.수요예측기법

주요 내용	
주관적 예측법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예측방법을 의미함 ① 단순추세 연장법: 지난 기의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더하여 이번 기의 매출액 예측치로 삼는 것 ② 판매사원 의견 종합법 : 판매사원들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또는 상품별로 다음 기의 매출액 예측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합산한 것 ③ 전문가 의견 종합법 : 여러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예측치를 수집한 다음 이를 단순평균하거나 아니면 가중 평균하는 것 ④ 델파이(Delphi)기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로부터 합의한 예측치를 얻어 내는 방법
소비자 조사기법	해당 상품의 잠재구매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 ① 컨셉트 테스트(concept test): 신상품의 컨셉트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을 파악하기위하여 잠재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시장테스트(market test) : 신상품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을 예측하기 위하여 잠재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시계열 예측법	과거의 매출액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의미함 ① 이동 평균법(moving averages): 최근 몇 개월 동안의 매출액 평균치를 다음 달 매출액 예측치로 삼는 방법 ② 지수 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가중 평균하여 예측치를 구하되, 최근의 값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법
상관관계 기법	매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 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매출액과 관계를 맺고 있는 변수들과 매출액 간의 통계적인 함수 관계를 이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 ② 선행 지수법(leading indicators method): 매출액의 변동에 앞서서 움직이는 변수들의 변화를 이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

5. 생산 및 기술분석

- 계획제품의 생산과 관련되는 제 요소의 분석, 즉 제품이 원만하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 충분한 시장성을 가진 좋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비용과 합당한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가.생산 및 기술분석의 조사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품의 특성	제품의 용도, 물리적 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채택하고자 하는 공정, 채택이유, 세부적인 공정 흐름분석.
▷기계와 장비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 성능, 신뢰성, 제조자, 가격, 대금지불 방식, 애프터서비스, 예비 부품조달, 인도방식과 일정 등
▷원자재	종류, 가격, 수량, 공급자, 공급자 위치, 공급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공장건물	필요한 공장건물의 크기 및 특성, 건축비 등.
▷대지 및 위치	필요한 공장부지의 크기, 가격, 위치 등.
▷동력과 용수	전기 가스, 공업용수 수요량과 조달 방법, 비용 등.
▷폐기물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식, 관련비용, 규제 등
▷일정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간.
▷인력	직접·간접 노동력, 기술수준, 임금 등.
▷원가 및 설비투자 비용 추정	제품의 제조원가 추정 및 설비 투자액 추정.

5. 생산 및 기술분석

나.생산 및 기술분석 항목

평가요소	주요내용
계획제품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용도 및 주요 소비 처 • 제품의 기능과 물리화학적 특징 • 표준제품 및 요구제품의 품질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수준과 수요영향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 정도 · 계열산업에 공통적인 표준제품 존재 여부 • 경쟁제품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의 제품, 수입품과의 비교 우위성(원가, 품질, 공정, 채택 원료 등) 여부 · 계획제품의 규격, 표준규격과의 관계, 품질 또는 표준의 차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기술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술의 존재여부 및 도입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 비용의 크기 · 기술인력의 존재 및 영입가능성 · 생산관련 요소의 준비 가능성 • 요구기술의 수준과 기술적 대안 및 지식재산권 확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요구 수준에 대한 기술의 적절성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 도입기술의 합리성 · 한가지 이상의 기술적 대안의 존재여부 · 신기술, 공업기반 기술 및 기술집약형 품목의 해당여부 · 생산가능 적정원가

5. 생산 및 기술분석

나.생산 및 기술분석 항목

평가요소	주요내용
기술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장래성과 수명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사업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여부 및 출현 가능성 · 보유기술의 기술 변화 사이클상의 단계 • 환경 및 공해 대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의 검토 · 공해방지 시설 등의 보완여부 • 안전성의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의 불안정성 · 사고의 위험성
생산시설의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입지인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입지인자 - 부지의 위치 및 상태, 급수사정, 배수, 공해물질의 처리, 기후, 풍토 · 경제적 입지인자 - 지가 및 매입의 제약점, 원료, 인력, 소비시장과의 관계 · 사회적 입지인자 - 토지이용상의 제한조건, 복지시설 및 근무조건 · 정치적 입지인자 - 국토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 정부시책 • 해당 업종의 주요 입지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부지와 비용 · 원재료 조달 용이성 · 교통, 용수, 전력 · 노동력 확보 용이성 • 관계 법규상의 제약요인과 정부시책 상의 촉진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시책관련 사항 · 토지이용의 제한조건 · 환경오염 문제

5. 생산 및 기술분석

나.생산 및 기술분석 항목

평가요소	주요내용
생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 가스, 용수 등의 조달가능성 • 필요한 인적자원의 조달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인원 및 기술능력 등 • 소요 원재료 수급의 원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원재료, 부재료의 종류 · 원단위 사정 · 원 부재료 조달의 용이성 및 파동 가능성
시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건물, 기계, 공작품 시설 계획 명세 • 필요시설의 검토 및 계획시설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 및 능력분석 · 사업규모 대비 계획시설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내용, 규모 및 적부 · 자동화 정도의 합리성 • 시설 상호간의 효율성 및 균형 여부 • 시설 공사 진행 계획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설 착공 및 완공계획, 운전계획 등 • 계획시설의 유지가능성 및 장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계 진부화에 따른 교체 용이성 · 시설 개체 시기 및 재원 · 생산설비의 대체성 및 호환성 · 설비의 수선 유지 가능성, 성능보전 대책

5. 생산 및 기술분석

나.생산 및 기술분석 항목

평가요소	주요내용
생산방법 및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설비의 적합성 및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분석을 전제로 한 생산설비 결정 · 부작용, 위험 검토 • 생산방식과 공정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택한 기술과 제조방법의 적정성 여부 · 생산공정 및 공장 자동화 효율성 분석 • 시설배치 및 작업환경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공정과의 연계성 · 관련 부대시설과의 연결관계 · 관계법규 등과의 관계
생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능력 및 가동률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능력 및 목표가동률 산정 · 생산요소의 조화성 • 생산조직 및 생산인력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조직 체계도 분석 · 생산 전문인력 현황 • 안전재고의 확보와 재고유지비용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변동에 따른 안전 재고량(적정 재고량) 사정 · 재고유지시설 형태, 규모 및 재고유지비의 최소화 방안

6.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및 수익성분석

가.추정재무제표의 작성

(1)추정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구분	주요내용
1. 기본자료의 수집 및 검토	회사명, 회계연도,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사업계획의 내용 해당업종의 표준재무비율
2. 회계처리방법의 결정 및 검토	재고자산 평가방법, 감가상각방법 등
3.매출계획의 검토	매출액의 추정, 매출계획에 따라 회사의 규모 결정
4.조직 및 인력계획계획의 검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노부비, 제조경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5.마케팅계획의 검토	판매비와 관련비용의 산출
6.생산계획의 검토	제조원가의 산출
7.투자(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계획 의 검토	유형자산의 산출근거, 감가상각비의 산출
8.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의 검토	자본금의 산출, 차입금의 산출, 투자자산의 산출
9.부속명세서의 검토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의 산출
10.추정재무제표의 작성	1.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 2.추정재무상태표의 작성 3.추정현금흐름표의 작성
11.추정재무제표의 정확성 확인	추정 재무제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검토

(2)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

구분	주요내용	근거
1. 매출액의 추정	(1) 목표매출액 = 목표판매량 × 판매예정단가 (2) 목표판매량 = (목표시장의 크기 × 달성가능한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계획서 상의 판매계획(예상) 수량 (3) 판매예정단가 = 판매계획 상의 예정판매가격	사업계획서(매출계획)
2. 매출원가의 추정	(1) 제조원가의 추정 ① 재료비 = 재료사용량 × 원재료 구입예정단가 - 재료사용량 = 제품생산량 × 제품단위당 재료사용량 - 제품생산량 = 생산계획에 따른 제품생산예정량 ② 노무비 = 원가계산대상기간의 생산직원 인건비 ③ 제조경비 = ㉓ 직접계산이 가능한 원가(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사용료 등) + ㉔ 직접계산이 불가능한 원가(표준재무비율 등의 활용) (2) 재고금액의 추정 (3)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제조원가 - 기말재고액	1. 사업계획서(생산계획 / 조직 및 인력계획 / 시설 및 투자계획 / 재고계획) 2. 업종표준재무비율
3.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추정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㉓ 직접계산이 가능한 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사용료 등) + ㉔ 직접계산이 불가능한 비용(표준재무비율 등의 활용)	1. 사업계획서(인력계획 / 시설 및 투자계획) 2. 업종표준재무비율
4. 영업외 수익의 추정	(1) 자금의 활용계획에 따른 예금 등의 이자 (2)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수익의 계산	1. 사업계획서(자금계획)
5. 영업외비용의 추정	(1) 자금의 조달계획에 따른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계획 (2) 차입금 및 이자율을 고려한 이자의 계산 (3)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가능한 비용의 계산	1. 사업계획서(차입 및 상환계획)
6. 법인세비용의 추정	(1)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계산 (2)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계산	1. 세법

(3) 추정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작성

구분	주요내용	근거
1. 자본금의 추정	자본금 = 직접투자예정액 + 투자유치예정액 (1) 창업자의 자기자본 직접투자예정액 (2)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투자유치 예정액	사업계획서(자금계획)
2. 잉여금의 추정	(1) 자본잉여금 = 투자유치금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2)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 상의 발생이익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배당액	투자유치계획서 손익계산서 배당계획
3. 부채의 추정	(1) 부채 = 소요자금의 추정액 - 자본금 추정액 + 총당금설정액 (당기순이익 발생액을 고려한 차입 및 상환계획 상의 금액을 가감) (2) 비유동부채 = 부채 - 유동부채 (3) 유동부채 = 정책자금, 금융차입금 등 장기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없는 자금조달액	사업계획서(자금계획, 차입 및 차입금상환계획)
4. 비유동자산의 추정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의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 시설 및 투자예정금액 - 감가상각비 2. 무형자산 = 지식재산권, 프로그램등록권 등의 투자예정금액 - 감가상각비 3. 기타의 비유동자산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부동산, 투자유가증권 등	사업계획서(투자계획)
4. 유동자산의 추정	(1) 유동자산 = 자본금 + 잉여금 + 부채 - 비유동자산 -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한 자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구분 (2) 당좌자산 = 유동자산 - 재고자산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당좌자산 - 판매전략에 따른 매출채권 - 기타의 당좌자산	사업계획서(판매전략, 투자계획)

나. 수익성 분석

구분	주요내용
수익전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매출액의 추정 ◦연도별 매출액에 따른 순이익의 적정성 ◦경쟁사 대비 순이익의 수준 ◦추정재무제표에 따른 재무구조의 적정성
투자수익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수익률(총자본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의 수준 및 목표수익률의 실현가능성 ◦금융비용 이상의 영업이익 실현가능성 ◦영업이익률의 수준 및 산업평균과의 비교
손익분기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고정비, 변동비)이 일치하므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점으로써 매출목표의 설정과 이익관리에 필요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변동비 ◦공헌이익률=(단위당공헌이익/단위당판매가격)또는 (총공헌이익/총매출액) ◦손익분기점판매량=총고정비/단위당 공헌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판매량 X 단위당 가격 또는 총고정비/공헌이익률 <p>〈사례〉 단위당 판매가격 1,000원 단위당 변동비 300원, 고정비 7,000,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원-300원 = 700원 ◦ 공헌이익률 = 700/1,000 = 0.7 ◦ 손익분기점 판매량 = 7,000,000/700 = 10,000개 ◦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개 X 1,000 = 10,000,000원 ◦ 또는 7,000,000.0.7 = 10,000,000원

다. 민감도 분석

- 기업의 경영환경에서 환경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설정하여 계획사업의 결과여부의 변화를 분석 검토하는 과정이다.
- 사업의 수익성, 자금조달가능성, 차입금의 상환가능성 등 주요 예측 또는 검토결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비교, 분석한다.
- 계획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고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폭을 측정하여 계획사업의 사업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 환경변화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설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게 실현되는 상황 - 시장점유율의 하락, 경쟁사의 출현, 불황의 지속 등 - 환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의 하락
설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 및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의 발생 -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가격 및 제반 수수료 등의 인상 - 노사협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 -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가격의 상승
설정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 1과 설정 2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시나리오분석〉

- 미래의 사업환경이 낙관적일 경우, 비관적일 경우, 기본가정대로 움직일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환경여건을 시나리오화하고 각각의 시나리오 하에서 매출수익, 발생원가 및 비용, 순이익, 자금의 조달과 운용, 투자수익률 등의 변화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신용도나 계획사업의 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다. 민감도 분석

〈민감도분석 사례〉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원 안	매 출 액	1,000,000	2,000,000	3,000,000
	총 원 가	700,000	1,400,000	2,100,000
	세전순이익	300,000	600,000	900,000
사례 1	매 출 액	900,000	1,800,000	2,700,000
	총 원 가	700,000	1,400,000	2,100,000
	세전순이익	200,000	400,000	600,000
사례 2	매 출 액	1,000,000	2,000,000	3,000,000
	총 원 가	770,000	1,540,000	2,310,000
	세전순이익	230,000	460,000	690,000
사례 3	매 출 액	900,000	1,800,000	2,700,000
	총 원 가	770,000	1,540,000	2,310,000
	세전순이익	130,000	260,000	390,000

7. 경제성 평가

가. 경제성평가의 개념

구분	주요내용
1.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20이상의 선택 가능한 투자안에 대하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분석을 할 때 시장성분석, 기술분석, 조직인력분석, 재무분석과 기타 전략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투자된 자본과 회수되어지는 수익의 관계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 대상사업 및 투자안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있다. 2) 수행사업에 대한 경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경영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3. 주요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2) 20이상의 선택 가능한 투자안에 대한 최적 투자안의 결정 3) 신규 시설의 구입 및 교체 또는 경제적사용기간의 결정 4) 사업의 확장이나 부진사업의 포기에 대한 의사결정 5) 대상사업 이나 시설의 투자에 대한 적정투자금액의 결정 6) 자가생산 또는 외주생산에 대한 의사결정
4. 경제성분석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사업 및 투자안의 물색 2) 시장성, 기술성 기타 사업성의 검토 3) 현금흐름의 추정 4) 자본비용의 계산 5) 경제성의 평가 6) 민감도 및 위험도 분석 7) 사업의 수행 및 투자의사결정 8) 성공사업의 수행

7. 경제성 평가

가.경제성평가의 개념

구분	주요내용
5. 경제성평가 방법	가. 단일투자안의 경우 대상사업 및 투자를 위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화 한 다음 경제성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나. 선택 가능한 2이상의 투자안이 있는 경우 1) 어떤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 단일 투자안의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다음 서로 비교하여 결정한다. 2) 어떤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에 종속적인 경우 대상사업 및 투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어떤 투자안이 채택되면 다른 투자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경우 추가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증분분석을 통해 투자안 간에 서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6.주요 관점	1) 대상사업 및 투자안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 2) 대상사업 및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사용하는 자본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
7.경제성평가의 중요성	1)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결과를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2)투자시점에서 거액의 현금유출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정을 번복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이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서 기업가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8.의사결정	◦대상사업에 대한 현금의 유입액이 현금의 유출액 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투자를 결정 ◦현금의 유입액이 현금의 유출액 보다 작게 나타날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7. 경제성 평가

나.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

구분	주요내용																	
1.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미래에는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이자율만큼의 이자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는 미래에는 현재보다 화폐의 실질구매력이 줄어들게 된다. (3) 미래에는 현재보다 불확실성(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2. 현재가치 (present value: PV)	가. 현재가치의 계산공식 금리가 i 이고 기간이 n 인 경우 n 년 후의 1원의 현재가치 = $1원 / (1+i)^n$ 나. 현재가치의 계산 예 5년 후에 받게 될 1,500만원을 금리 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계산 예] 현재가치 = $15,000,000 / (1+0.05)^5 = 11,752,892$ <table border="1" data-bbox="386 768 1802 901"> <thead> <tr> <th>현재</th> <th>1년후</th> <th>2년후</th> <th>3년후</th> <th>4년후</th> <th>5년후</th> </tr> </thead> <tbody> <tr> <td>11,752,892</td> <td>12,340,537</td> <td>12,957,563</td> <td>13,605,442</td> <td>14,285,714</td> <td>15,000,000</td> </tr> </tbody> </table>						현재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11,752,892	12,340,537	12,957,563	13,605,442	14,285,714	15,000,000
현재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11,752,892	12,340,537	12,957,563	13,605,442	14,285,714	15,000,000													
3. 미래가치 (future value: FV)	가. 미래가치의 계산공식 금리가 i 이고 기간이 n 인 경우 1원의 n 년 후의 미래가치 = $1원 \times (1+i)^n$ 나. 미래가치의 계산 예 현재의 보유금액 1,000만원을 금리 5%를 적용하여 5년 후 미래가치로 환산한다면? [계산 예] 미래가치 = $10,000,000 \times (1+0.05)^5 = 12,762,815$ <table border="1" data-bbox="386 1186 1802 1315"> <thead> <tr> <th>현재</th> <th>1년후</th> <th>2년후</th> <th>3년후</th> <th>4년후</th> <th>5년후</th> </tr> </thead> <tbody> <tr> <td>10,000,000</td> <td>10,500,000</td> <td>11,025,000</td> <td>11,576,250</td> <td>12,155,062</td> <td>12,762,815</td> </tr> </tbody> </table>						현재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10,000,000	10,500,000	11,025,000	11,576,250	12,155,062	12,762,815
현재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10,000,000	10,500,000	11,025,000	11,576,250	12,155,062	12,762,815													

7. 경제성 평가

나.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

구분	주요내용						
4. 연금가치(annual value, uniform series)	가. 연금가치의 개념 - 미래 기간의 다른 여러 시점에서의 수입 및 지출을 이자를 고려하여, 매년말 등가로 환산한 수치를 말한다. - 미래의 정해진 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씩 지급되는 현금흐름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연금의 현재가치라 한다.						
	나.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방법 금리가 i 이고 기간이 n 인 경우 연금 1원의 현재가치 = $1/(1+i) + 1/(1+i)^2 + \dots + 1/(1+i)^n$ 또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연금의 현재가치 = 연금 × 연금의 현재가치요소						
	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 예 1년 후에 받게 될 금액이 100만원이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받게 되는 경우 금리 5%를 적용한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계산 예] 연금의 현재가치 = $1,000,000/(1+0.05) + 1,000,000/(1+0.05)^2 + 1,000,000/(1+0.05)^3 + 1,000,000/(1+0.05)^4 + 1,000,000/(1+0.05)^5 = 43,294,763$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계
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현재가치	952,380	907,029	863,837	822,702	783,526	4,329,474	

7. 경제성 평가

다. 순현재가치법

구분	주요내용	
1. 순현재가치의 개념	(1) 순현재가치란 (net present value : NPV)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유입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뺀 값을 말한다. (2) 순현재가치법은 대상사업의 경제성평가에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순현재가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C1/(1+i) + C2/(1+i)^2 + \dots + Cn/(1+i)^n] - P$ 단, Cn = n 시점에 있어서의 순현금흐름 i = 투자안에 대한 적정 할인율(자본비용) P = 투자안의 당초 투자비용 n = 투자안의 예상 내용연수	
2. 투자의사결정기준	1)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가 영(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영(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한다. 2) 2이상의 투자안의 경우 상호 배타적인 여러 투자안 들이 있는 경우에는 순현재가치가 영(0)보다 큰 투자안들 중에서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3. 장점과 단점	<p style="text-align: center;">장점</p> 가) 현금흐름과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를 모두 고려한 방법으로 다른 평가방법에 비하여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제 발생 순이익의 크기로 비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단점</p> 가) 할인율(자본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의사결정에 유용한 순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나) 투자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안의 경우 상호간의 타당한 비교가 곤란하다. 즉 투자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순현재가치의 크기만을 비교함으로써 수익률이 작으면서도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7. 경제성 평가

다. 순현재가치법

구분	주요내용						
사례1	<사례>사업초기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매기의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순현재가치법에 의한 경제성평가를 한다면? 자본비용은 10%로 계산한다.						
	구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투자	100억	-	-	-	-	-
	현금흐름	-	-20억	10억	30억	80억	70억
	<해설>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 ①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②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10억 / (1+0.1)^2 + 30억 / (1+0.1)^3 + 80억 / (1+0.1)^4 + 70억 / (1+0.1)^5 = 128.90억$ ③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100억 + 20억 / (1+0.1) = 118.18억$ ④ 순현재가치 $128.90억 - 118.18억 = 10.72억$ ⑤ 의사결정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영(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2	<사례>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갑과 을 2가지 투자안에 대하여 순현재가치법에 의하여 경제성을 평가 하려고 한다. 자본비용은 10%이며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	“갑” 투자안			“을” 투자안		
	0	-100,000백만원			-100,000백만원		
	1	60,000백만원			50,000백만원		
	2	60,000백만원			30,000백만원		
3	-			40,000백만원			

7. 경제성 평가

다. 순현재가치법

구분	주요내용
사례2	<p>〈해설〉</p> <p>□ "갑"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p> <p>①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p> <p>②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60,000\text{백만원}/(1+0.1) + 60,000\text{백만원}/(1+0.1)^2 = 104,132\text{백만원}$</p> <p>③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p> <p>④ 순현재가치 $104,132\text{백만원} - 100,000\text{백만원} = 4,132\text{백만원}$</p> <p>⑤ 투자안에 대한 평가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영(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p> <p>□ "을"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p> <p>①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p> <p>②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50,000\text{백만원}/(1+0.1) + 30,000\text{백만원}/(1+0.1)^2 + 30,000\text{백만원}/(1+0.1)^3 = 100,300\text{백만원}$</p> <p>③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p> <p>④ 순현재가치 $100,300\text{백만원} - 100,000\text{백만원} = 300\text{백만원}$</p> <p>⑤ 투자안에 대한 평가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영(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p> <p>□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 "갑"투자안과 "을"투자안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둘다 순현재가치가 영(0)보다 크므로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투자안과 "을"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이라면 두가지 투자안 중 순현재가치가 큰 "갑"투자안을 선택하여야 한다.</p>

7. 경제성 평가

라. 수익성지표법(PI : Profitability Index)

구분	주요내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지표법은 순현재가치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 순현재가치법은 투자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안이 있을 경우 투자안 상호간에 타당한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익성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수익성지표의 계산	<p>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p> <p>수익성지표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p>
순현재가치법과의 차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료성 측면에서 편리하다 2) 순현재가치법은 순현재가치의 절대금액으로 평가하나 수익성지표법은 비율로서 평가한다.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자와 분모에 어떤 현금흐름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방법이 없다. 2) 투자규모의 크고 작음을 구별할 수 없다. 3) 투자규모가 다른 복수의 투자안 중에서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p>[사례] 다음과 같은 2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갑"투자안이 순현재가치의 현재가치는 크나 "을"투자안이 수익성지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p> <p>① 투자안 갑 현금유입 : 100 현금유출 : 90 NPV : 10 PI : 1.11</p> <p>② 투자안 을 현금유입 : 10 현금유출 : 8 NPV : 2 PI : 1.25</p>
투자의사결정	<p>-수익성지표가 1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투자안을 기각시킨다.</p>

7. 경제성 평가

마. 내부수익률법

구분	주요내용
의의	어떤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0이 되게 내부수익률을 구해서 시장에서 평가된 자본비용(할인율)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의 개념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영(0)이 되게 하는 이자율(할인율)을 말한다. 즉 투자로 인한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이자율(할인율)을 말한다.
내부수익률의 산정	<p>내부수익률은 미지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순현재가치를 영(0)으로 하는 방정식(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에서 할인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내부수익률을 구할 때 시행착오법 및 보간법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 방정식에 의하여 구하는 것보다 간편할 수 있다.</p> <p>내부수익률 = 현금흐름에 의한 순현재가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가 영(0)이 되게 하는 할인율</p> <p>즉 $C1/(1+i) + C2/(1+i)^2 + \dots + Cn/(1+i)^n = P$ 를 만족시키는 i</p> <p>단, $Cn = n$ 시점에 있어서의 순현금흐름 $i =$ 투자안에 대한 적정 할인율(자본비용) $P =$ 투자안의 당초 투자비용 $n =$ 투자안의 예상 내용연수</p>
투자의사결정기준	<p>1)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계산된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시장에서 평가된 자본비용(요구수익률,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대상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투자에 대한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p> <p>2)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 들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큰 투자안들 중에서 내부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p>

7. 경제성 평가

마. 내부수익률법

구분	주요내용			
내부수익률의 장점과 단점	<p>1) 장점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순히 순현재가치만을 비교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액이 큰 투자안의 현재가치가 크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내부수익률법은 투자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p> <p>2) 단점 가) 내부수익율(IRR)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여러 가지 답이 나오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안의 선택여부가 다르게 되므로 명백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 유용성이 떨어진다. 나) 수익률의 크기와 사업수행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사업의 수행기간이 짧다면 실제 순이익은 적게 될 것이고 비록 수익률이 적을지라도 사업수행기간이 길다면 순이익이 크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 IRR법은 가치가산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NPV(A) + NPV(B) = NPV(A+B)$ $IRR(A) + IRR(B) \neq IRR(A+B)$ 따라서 여러 가지 대상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게 될 경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됨. 라) 투자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단순한 수익률에 의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갑"투자안이 "을"투자안보다 우월하다고 단순하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투자안의 비교사례〉</p>			
	구분	투자	유입	IRR
갑 투자	1,000	2,000	100%	
을 투자	20,000	38,000	90%	

7. 경제성 평가

마. 내부수익률법

구분	주요내용		
	<p><사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갑과 을 2가지 투자안에 대하여 자본비용은 10%이며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p>		
	기간	"갑" 투자안	"을" 투자안
	0	-100,000백만원	-100,000백만원
	1	60,000백만원	50,000백만원
	2	60,000백만원	30,000백만원
	3	-	40,000백만원
사례	<p>1) '갑' 투자안의 내부수익률 가) 시행착오를 거쳐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가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과 같게 되는 수익률은 13%와 14%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할인율이 13%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60,000\text{백만}/1.13 + 60,000\text{백만}/1.13^2$ $= 53,097\text{백만} + 46,988\text{백만}$ $= 100,085\text{백만}$ ② 할인율이 14%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60,000\text{백만}/1.14 + 60,000\text{백만}/1.14^2$ $= 52,631\text{백만} + 46,168\text{백만}$ $= 98,799\text{백만}$ 나) 보간법에 의하여 내부수익율을 구하면 $13 + (100,085 - 100,000)/(100,085 - 98,799)$ $= 13 + 85/1,286$ $= 13.066(\%)$</p>		

7. 경제성 평가

마. 내부수익률법

구분	주요내용
사례	<p>2) '을' 투자안의 내부수익률</p> <p>가) 시행착오를 거쳐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가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과 같게 되는 수익률은 10%와 11%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p> <p>① 할인율이 10%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p> $50,000\text{백만}/1.1 + 30,000\text{백만}/1.12 + 40,000\text{백만}/1.13$ $= 45,454\text{백만} + 24,793\text{백만} + 30,052\text{백만}$ $= 100,299\text{백만}$ <p>② 할인율이 11%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p> $50,000\text{백만}/1.11 + 30,000\text{백만}/1.112 + 40,000\text{백만}/1.13$ $= 45,045\text{백만} + 24,348\text{백만} + 29,247\text{백만}$ $= 98,640\text{백만}$ <p>나) 보간법에 의하여 내부수익율을 구하면</p> $10 + (100,299 - 100,000)/(100,299 - 98,940)$ $= 10 + 299/1,659 = 10.18(\%)$
	<p>3)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p> <p>'갑' 투자안과 '을' 투자안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갑' '을' 투자안 모두 수익률이 자본비용 10%보다 크므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을'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이라면 '갑' '을' 투자안 중 내부수익률이 더 큰 투자안인 '갑' 투자안을 채택해야 한다.</p>

7. 경제성 평가

바.회수기간법

(1) 회수기간법의 의의

대상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기간을 미리 정한 후 이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투자자금의 유동성이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회수기간의 개념

회수기간법의 적용 시 회수기간이란 대상사업에 투자된 모든 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사업기간 중 매년 현금유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초기의 투자액(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예상되는 총 투자액)과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자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회수기간이 달라진다.

[사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회수기간을 계산한다면 ?

초기투자액 : 100억원 1기 : -20억원 2기 : 10억원 3기 : 30억원 4기 : 80억원 5기 : 70억원

자본비용 : 10%

① 자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제 4기에 회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비고
1. 현금흐름	-100	-20	10	30	80	70	
2.누적현금흐름	-100	-120	-110	-80	0	70	전기 2+1

② 자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경우(제 5기에 회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비고
1. 현금흐름	-100	-20	10	30	80	70	
2. 자본비용	0	-10	-13	-13.3	-11.6	4.7	전기 3×10%
3. 누적현금흐름	-100	-130	-133	-116.3	-47.9	17.4	전기3+2+1

7. 경제성 평가

바. 회수기간법

(3) 회수기간법의 투자 의사결정 기준

1)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계산된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설정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길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한다.

2)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들의 경우

계산된 대상사업의 투자안에 대한 회수기간이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설정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안들 중에서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4) 회수기간법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가) 계산이 간편하며 이해하기가 쉽다. 따라서 경제성평가에 대한 시간, 비용, 노력 등이 절약될 수 있다.

나)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금유동성을 측정한다.

다) 회수기간법은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으며 회수기간이 길수록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단점

가) 잔존가치 등 회수기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유입액을 무시하고 있다.

나) 회수기간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돈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 의사결정기준인 회수기간의 결정이 주관적이기 쉬우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회수기간법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투자계획의 위험도를 추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 유용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평가방법들과 병용함으로써 대상사업의 투자안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경제성 평가
 바. 회수기간법

〈 투자 의사결정의 사례〉

[사례] 다음과 같은 투자안들에 대하여 회수기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및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회사 내부의 투자회수 기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내용]

기간	사업 1	사업 2	사업 3	비고
초기투자액	-5,000	-5,000	-5,000	
1년	800	1,000	1,000	
2년	1,000	600	500	
3년	1,300	1,200	1,000	
4년	2,000	1,800	1,700	
5년	1,500	2,000	4,000	
회수기간	3.95	4.2	4.2	

1) 회수기간법에 의한 투자 의사결정

가) 세 투자안이 모두 독립적인 경우

회사의 내부 기대회수기간인 5년 이내에 회수가 이루어지는 세 투자안 모두 채택되어질 것이다

나) 세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인 경우

세 투자안 중 가장 회수기간이 빠른 "사업 1"이 채택되어진다.

2)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사례에서 각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이 회수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나) "사업 2"와 "사업 3"은 회수기간이 4.2년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업 2"가 "사업 3"보다 우월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5년도까지의 모든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사업 3"가 "사업 2" 보다 우월한 투자안이 될 수 있다.

7. 경제성 평가

사. 회계적이익률법

구분	주요내용
1. 개념	◦ 회계적이익률법은 과거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회계적이익의 발생액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2. 회계적이익률	회계적이익률은 일반적으로 대상사업의 납세후 연평균순이익과 대상사업에 대한 연평균투자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회계적이익률 = 회계상의 이익/평균투자액 = 연평균 순이익/연평균 투자액
3. 투자 의사결정 기준	1) 독립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회계적이익률이 기업이 설정해 놓은 목표이익률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작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2) 상호배타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이 설정해 놓은 목표이익률보다 큰 회계적이익률이 발생하는 사업 중 가장 높은 회계적이익률이 발생하는 사업을 투자대상으로 결정한다.
4. 장점과 단점	1) 장점 가) 회계상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단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간편하다. 나) 산출된 결과와 평가방법을 이해하기가 쉽다. 2) 단점 가) 경제성평가에 있어서 회계적이익률의 의미가 현금흐름에 비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돈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다) 비교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내부이익율의 결정이 너무 임의적이다.

〈회계적이익률법에 의한 투자의사결정의 사례〉

[사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세후 순이익의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내부 목표이익률이 10%일 경우 의사결정을 한다면 ?

구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초기투자액	5,000					
감가상각비	-	1,000	1,000	1,000	1,000	1,000
세후순이익	-	400	500	600	700	800

1) 회계적이익률의 계산

가) 연평균투자액의 계산 = $15,000 / 5 = 3,000$

나) 연평균 세후순이익의 계산 = $3,000 / 5 = 600$

다) 회계적이익률 = $600 / 3,000 = 0.2$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계
기초가액	5,000	4,000	3,000	2,000	1,000	15,000
감가상각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후순이익	400	500	600	700	800	3,000

2) 투자의사결정

회사의 내부 목표이익률(10%) 보다 높은 이익률(20%)이 실현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7. 경제성 평가

아. 실무적용시 고려할 사항

구분	주요내용
1. 사업성검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장기간의 시장조사 및 경제성분석은 신뢰성이 낮아진다.
2.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연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법인세법, 회계담당자의 선택 등) ◦감가상각방법은?(정율법, 정액법, 법인세법의 규정 등) ◦토지의 평가는 취득시점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가?
3. 재고자산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의 선택과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경제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일관성 있는 적용 필요 ◦보수적 입장의 선택여부.
4.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및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경제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보수적 입장의 선택여부.
5. 추정과 평가	<p>오류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p> <p>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산정 등 -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로 하는 것이 좋다</p>
6. 평가의 대상	<p>손익계산서상의 이익보다 현금 흐름으로 평가</p>
7. 인플레이션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레이션을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일관성 있게 반영시켜 투자안을 평가해야한다. - 명목가치로 추정된 현금흐름 - 명목할인율 - 실질가치로 추정된 현금흐름 - 실질할인율 ※명목할인율=실질할인율+인플레이션+(실질할인율×인플레이션)
8. 기타	<p>시기적 긴급성과 연기 가능성, 전략적인 선택, 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p>